

종합감사

감사 처분요구서

- 한국저작권보호원 -

2019.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범위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현황	2
1. 조직 및 인원	2
2. 예산 현황	3
3. 주요 업무	3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요구와 통보 사항	8
가. 목차	8
나. 명세	8
(1) 원장에 대한 중식비 지급 부적정(시정·주의)	9
(2)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부적정(주의·통보)	12
(3)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부적정(주의·통보)	26
(4) 국고보조사업 정산 등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34
(5) 물품관리업무 소홀(주의·통보)	38
(6)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43
(7)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사업 근로자 복무관리 부적정(주의)	50
(8)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복무관리 부적정(주의)	56
(9) 직원 출근 관리 및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59
(10) 계약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64
(1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 업무 부적정(주의)	70
(1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73
(13) 이사회 운영 부적정(주의)	78
(14) 「정보화 업무 운영 지침」 미준수(주의)	82
(15)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통보) · 88	
(16) 저작권 OK 지정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필요(통보)	93
(17) 불법저작물 실버감시원 성과목표 설정 및 복무관리 등 제도운영 미흡(통보) ···	96
(18) 직원폭언에 대한 조치 및 노조활동 등 관련 발언 부적정(통보)	100
(19) 신규채용 직원 경력 산정 부적정(통보)	105
(20) 직책수당 지급대상인 팀장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통보)	108
(21)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운영 부적정(통보)	111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2016년 신설 이후 종합감사를 수감한 적이 없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관운영, 저작권보호 관련 시책수립 및 사업 수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이번 감사는 2016년 이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한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직·인사 및 복무관리, 예산 집행 및 계약 업무 처리, 저작권보호 사업 추진, 시설·물품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9. 5. 20.부터 같은 해 6. 4.까지(2019년 을지태극연습 기간 5. 29.~5. 30. 제외) 10일 간 실지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담당관 등 총 1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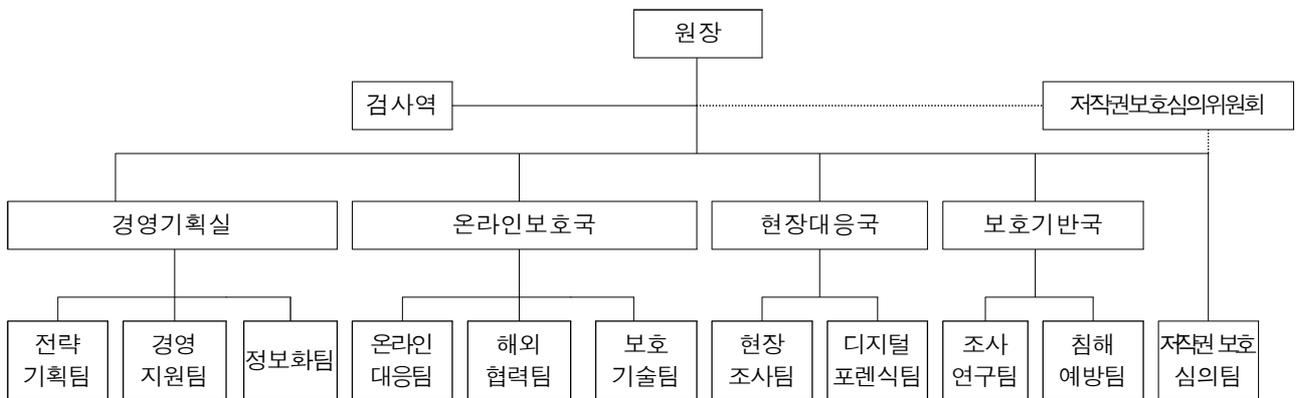
II.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9월에 설립되어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보호와 침해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17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조직은 1실 3국 1검사역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원장 1명, 직원 113명 등 총 114명(원장을 포함한 현원은 98명)이다.

□ 조직도 : 1실 3국 1검사역 11팀



□ 인원(정원 114명, 현원 98명)

2019. 6. 4. 기준, (단위: 명)

구분	직급	정원(A)	현원(B)	결원(A-B)
정규직	원장	1	1	0
	1급	2	0	2
	2급	9	3	6
	3급	19	16	3
	4급	25	31	-6
	5급	26	15	11
	소계	82	66	16
무기계약직		32	32	0
계		114	98	16

2. 예산 현황

2019년도 예산은 총 19,826백만 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사업에 7,662백만 원, ‘국내 저작권 보호활동’ 사업에 10,679백만 원, ‘해외 저작권 보호 협력’ 사업에 1,365백만 원,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사업에 120백만 원을 각각 배정하고 있다.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2018	2019	증감		비고
			증감	%	
<총 액>	16,201	19,826	3,625	22.4%	
▪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6,129	7,662	1,533	25.0%	국고 : 7,501 자체 : 161
▪ 국내 저작권 보호활동	8,442	10,679	2,237	26.5%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882	882	-	-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4,091	5,416	1,325	32.4%	국고 : 5,077 자체 : 339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950	845	△105	△11.1%	
- 불법복제물 현장단속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	1,746	2,763	1,017	58.2%	
- 저작권보호 및 침해예방	773	773	-	-	
▪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1,495	1,365	△130	△8.7%	
-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	1,475	1,345	△130	△8.8%	
-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20	20	-	-	
▪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135	120	△15	△11.1%	

3. 주요 업무

-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및 종합상황실·불법복제물추적관리시스템 운영) 및 불법복제물 현장단속 및 디지털과학수사 지원
-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저작권보호 홍보,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저작권 OK 지정)
- 해외저작권 보호협력(해외 침해대응 통합모니터링구축, 국제저작권보호인력 워크숍, 국제저작권 기술컨퍼런스)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이번 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총 26건(시정 1건, 주의 14건, 통보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건, 명, 천 원)

합계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수사 요청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계	일반	인사 (인원)	모범 사례		
26	2,800	9		1 (2,800)	14 (9)			11	11				

가. 저작권 보호 사업 추진 분야

-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억제를 위한 불법복제물 유통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에 대한 관리 소홀 및 정보 자원 부족 등으로 온라인 자동 모니터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연계 장애 등을 방치하고 있고, 보호요청 저작물에 대한 침해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즉시 통지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실하게 함.**(주의)**
 -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토렌트에서의 모니터링 대상 장르(음악, 출판물, 게임물, 소프트웨어 등) 확대 등을 위해 정보 자원(서버, 스토리지, 메모리 등) 증설 등 필요**(통보)**
-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의 모니터링을 위해 채용한 재택모니터링 사업 근로자 중 근태불량자(3회 초과 지각·무단결근·무단조퇴)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지 않는(2016년 6명, 2017년 14명 중 7명, 2018년 86명)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주의)**

- 불법으로 은닉·유통되는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소 출입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필요**(통보)**
- 저작권 OK 지정(합법저작물 유통인증) 업무를 신청에 의해 지정하는 소극 처리보다는 출판매장의 사례*처럼 캐릭터, 음악매장, 만화 분야에 대해서도 기업현황을 파악(시장조사, 협회 협조)하여 지정 가능한 업체의 신청 유도 및 확대방안 모색 필요**(통보)**
 - * 2018년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협조로 출판매장 167개소 신규 지정 대폭 확대
- 오프라인 유통 불법저작물 감시를 위한 실버감시원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버감시원의 제보실적 추이 및 복무실태를 분석하여 성과목표(전년도 제보 실적 대비 3%) 합리적 재설정 및 주단위에서 일단위로의 복무관리 강화 필요**(통보)**

나. 시설·물품 관리 및 정보시스템 관리 분야

- 분산 운영 중인 전산자원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해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임차공간 변경(서울산업진흥원 건물에서 누리꿈스퀘어로 변경) 등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여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 사안을 통합발주하거나, 소방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주의)**
- 기관운영 및 저작권 보호활동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물품) 4,191점을 관리하면서,
 - 2018년 이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7년에는 물품수량만 조사하고 불용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음.**(주의)**
 - 샘플(이동이 자유로운 물품) 조사 결과 일부 물품(989점)에 대해 소재 미확인(3점), 물품관리대장과 규격 상이(2점), 사용 불가 물품 보관(34점) 등이 확인되었음.**(통보)**
- 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정보화 업무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주의)**
 - ※ 정보화시행계획 미수립, 정보화 산출물 관리 소홀, 프로그램 등록·관리 소홀

다. 예산집행·계약 업무처리 분야

- 원장에게 중식비 지급에 대해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고, 2017. 3. 원장 임명 문서에 관련 내용도 없는데, 연봉 외에 별도 중식비(월 10만 원) 지급(2017. 3.~2019. 6., 28개월)(**시정(2,800천 원 환수)/주의**)
 - *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 체결 시(2016. 10. 12.) 노조의 요청으로 연봉에 중식비(월 10만 원) 포함을 계약서에 명기
- 팀장급 관리자에게 직책수당(50만 원)과 함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연장 및 휴일 근무 수당 지급지침」 개정 필요(**통보**)
-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 등의 증빙자료가 없거나, 목적외(인쇄비, 강연료, 차량임차비 등)로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주의**)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입찰공고 기간을 따르지 않았고, 적격심사제 적용 대상인 공사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여 정기 하자검사가 누락되거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미정산한 채 대가를 지급함.(**주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공사계약을 제외하는 등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필요.(**통보**)
- 물품구매 및 용역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의 전자조달시스템 미이용(1건), 예정가격 작성 없이 수의 계약 추진(5건),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하면서 수입인지 미첨부(37건) 등의 사례가 있었음.(**주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의무 구매 비율(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2017~2018년 기간 동안 달성하지 못하였음.(**주의**)
- 보조사업(2018년 민간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사업비 임의 집행, 용역사업 결과(인쇄물 등) 미제출 등이 있었는데도 정산 확정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주의**)
 - 외국업체와의 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통보**)

라. 조직·인사 및 복무관리 분야

- 원장은 기관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직원 폭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였고, 노조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조직 위상이 실추되게 하였음.**(통보)**
-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타기관 근무 경력 일부, 군 경력 등을 연봉책정에 반영하지 않아 4명의 직원에게 연봉 계 8,350,000원 미지급 초래**(통보)**
- 「복무규칙」 개정(3회) 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이사회 소집 통보를 규정에 명시된 기한(7일)을 지키지 않았음.(11회 중 7회 미준수)**(주의)**
- 사전신고 및 복무처리(연가, 외출 등) 없이 근무시간 내 강연, 심사 등 외부강의를 실시 함.**(주의(개인주의 3명 포함))**
- 지속적·반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들이 많은데도 지각자에 대한 근태상황을 파악·관리하지 않고 있음.**(주의(개인주의 6명 포함))**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특별조사 결과(2018. 11. 16.~12. 28.) 처분 요구 사항의 이행, 인턴경력 산정기준의 명확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준용의무 사항 반영, 퇴직월 급여 및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 정년퇴직일 기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개정 필요.**(통보)**

2. 처분요구와 통보 사항

가. 목차

일련 번호	관계기관	처분요구 종 류	제 목	인원 (금액)	비고
1	한국저작권보호원	시정·주의	원장에 대한 중식비 지급 부적정	(2,800,000)	
2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통보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부적정		
3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통보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부적정		
4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통보	국고보조사업 정산 등 관리 부적정		
5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통보	물품관리업무 소홀		
6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 추진 부적정		
7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사업 근로자 복무관리 부적정		
8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복무관리 부적정	3	
9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	직원 출근 관리 및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6	
10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	계약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11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 업무 부적정		
12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3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	이사회 운영 부적정		
14	한국저작권보호원	주의	「정보화 업무 운영 지침」 미준수		
15	한국저작권보호원	통보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6	한국저작권보호원	통보	저작권 OK 지정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필요		
17	한국저작권보호원	통보	불법저작물 실버감시원 성과목표 설정 및 복무관리 등 제도운영 미흡		
18	한국저작권보호원	통보	직원폭언에 대한 조치 및 노조활동 등 관련 발언 부적정		
19	한국저작권보호원	통보	신규채용 직원 경력 산정 부적정		
20	한국저작권보호원	통보	직책수당 지급대상인 팀장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21	한국저작권보호원	통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운영 부적정		
합 계		21건	* 원장 중식비 2,800,000원 환수	주의 9명	

나. 명세 : 별첨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시정·주의요구

제 목 원장에 대한 중식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보수규정」에 따라 매년 원장의 연봉을 결정·지급(2017년 95,900,229원¹⁾, 2018년 124,124,820원)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호원 「보수규정」 제4조와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원장의 보수는 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²⁾, 원장의 연봉은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호원은 설립(2016. 9. 30.) 직후인 2016. 10. 12.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의 요청에 따라 연봉에 중식비(월 10만 원)가 포함된다고 연봉계약서에 명기³⁾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 기본급은 별도로 지급

1) 현 원장은 2017. 3. 8.부터 재직 중임.

2) 직원 보수의 경우에는 보호원 「보수규정」에 ① 연봉, ② 성과급, ③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연봉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의 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제 규정에 의한다.

하는 중식비 1,2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원은 임원인 원장의 경우에는 노조에서 중식비 별도 지급을 요청한 바 없고, 2017. 3월 현 원장을 임명한 문서에 연봉 외에 중식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는데도, 2017년 3월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표 2]와 같이 매월 10만 원씩 계 280만 원의 중식비를 원장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표 1] 원장과 직원의 보수 지급방식 비교(2017년 기준)

(단위: 원)

구분	책정연봉	월 기본급	월 기본급 산정방식	중식비
A국장	67,134,028	5,494,502	책정연봉-중식비(1,200,000원)/12월	월 100,000원 *연봉에 포함
원장	117,383,004	9,781,917	책정연봉/12월	월 100,000원 *연봉 외 추가지급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표 2] 원장에게 중식비를 지급한 현황

(단위: 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급액	-	1,000,000	1,200,000	600,000	2,800,000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현재는 퇴직한 전 팀장이 2017. 3. 13. □과에 원장의 연봉내역(중식비 포함)을 이메일로 송부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과)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계속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만약 보호원이 원장에게 연봉 외에 추가로 중식비를 지급하려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원장의 보수에 제수당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중식비

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과)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보호원은 중식비가 포함된 원장의 연봉내역표를 문화체육관광부(□과)에 이메일로 송부했을 뿐 「보수규정」 개정 없이 원장에게 중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바도 없고, 연봉 외에 중식비를 추가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과)의 승인을 받은 바도 없어 문화체육관광부(□과)에 원장의 연봉내역표를 이메일로 송부했다는 것만으로 원장에게 중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은

- ① 정당한 지급근거 없이 원장에게 지급한 중식비 계 2,800,000원을 환수하기 바라며,
- ② 앞으로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중식비 등 연봉 외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③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원장에게 연봉 외에 추가로 중식비를 지급한 것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에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억제를 위한 불법복제물의 유통 감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등 3개의 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표 1]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관련 정보시스템 예산투입 현황

(단위: 천 원)

정보시스템명	사업명	추진연도	사업비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2017	43,896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2018	215,695
	소 계		259,591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시스템 확대구축	2017	176,000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고도화 및 운영	2018	196,000
	소 계		372,000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종합상황실) 구축	2017	200,200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2018	91,795
	소 계		291,995
합 계			923,586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부적정

보호원은 웹하드(Webhard)¹⁾(일반웹하드, 모바일웹하드)를 모니터링 하여 영화, 방송물, 음악, 출판물, 게임물,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저작권 침해의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이하 “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2008년 저작권보호센터에서 구축, 2017년 보호원에서 재구축)하고 있다.

보호원은 추적관리시스템에서 채증²⁾한 정보가 중점보호 저작물³⁾, 보호요청 저작물⁴⁾의 불법복제물이면 담당자는 이를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⁵⁾’(이하 “심의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증한 정보가 긴급대응저작물(개봉 후 3개월 이내의 영화)의 불법복제물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집한 증거자료를 전송하여 저작권 침해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자동 모니터링 대상 웹하드 관

1) 문서나 파일을 저장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관리 서비스

2) 1단계: 게시물 상세화면 캡처(Capture), 2단계: 게시물 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화면 캡처, 3단계: 다운로드된 파일 실행 및 화면 캡처(다운로드한 파일은 캡처 후 삭제)

3) 보호원 ©팀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매달 영화, 방송물, 음악, 출판물, 게임물, 소프트웨어, 만화 등에 대한 중점보호 저작물 선정

4) 저작권자가 보호요청한 저작물

5) 불법복제물 신고 및 심의를 통한 시정권고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리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일반웹하드에서 모니터링 및 증거자료 수집은 게시된 파일을 내려받는⁶⁾ 관계로 네트워크 및 서버에 부하를 줄 수 있어 장애 발생의 위험이 큰데도, 일반PC에 검색프로그램⁷⁾을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재택모니터링⁸⁾이 실시되지 않는 취약시간대(04시~10시)에도 모니터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시스템이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검색프로그램이 정지(네트워크 장애, PC재부팅, 응용프로그램 오류 등의 문제)된 경우 담당자(현재 1명)에게 알림 기능이 없어 [표 2]와 같이 담당자 부재 중 자동 모니터링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관련 로그(Log)⁹⁾가 기록되지 않고 있어 장애 원인 파악도 곤란한 상황이다.

[표 2] 모니터링 실패 일수 현황(2019년)

구분	2월	3월	4월	5월	비고
일반웹하드	13	21	1	8	운영서버 노후화로 PC에 검색 프로그램 이전 설치(2~3월)
모바일웹하드	2	-	-	-	
합계	15	21	1	8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6) 게시된 파일을 검색프로그램 운영PC로 내려받아 실행 화면을 캡처한 후 파일 삭제, 모바일웹하드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파일 다운로드 필요 없음)되어 실행된 화면에 대한 캡처를 하고 있어 부하가 크지 않음.

7) 웹하드별 수집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서버에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8)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주·야간·심야 등 시간대 별로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실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근무 형태

구분	주간	야간	심야	비고
주중4일, 주말1일 근무자	10시~16시(5시간)	19시~17시(4시간)	01시~04시(3시간)	취약시간대: 04시~10시
주중5일 근무자	10시~17시(6시간)	-	-	

9)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등이 실행 중에 발생하는 작업과 이벤트 등에 대한 기록

셋째, [별표 1]의 모니터링 대상 웹하드¹⁰⁾ 80개(일반웹하드: 44개, 모바일웹하드: 36개) 중 [표 3]과 같이 ‘♠♠’, ‘♣♣’ 등 6개의 웹하드에 대해서는 수집프로그램¹¹⁾(이하 “스크립트”라 한다)를 개발¹²⁾하지 않고 있었고, ‘♣♣’에 대해서는 검색오류 발생에 따른 스크립트 수정을 하지 않아 해당 웹하드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3] 스크립트 미개발(미수정) 웹하드 현황

연번	유형	업체명	웹하드명 (모니터링 대상 포함시기)	감시대상 여부	비고
1	일반웹하드	㈜◇■	♣♣	X	수집오류로 스크립트 수정필요
2	일반웹하드	㈜◇□	♠♠	X	
3	일반웹하드	㈜◇■	♣♣	X	
4	일반웹하드	㈜◇目	♠♠	X	
5	모바일웹하드	㈜◇冊	♣♣	X	
6	모바일웹하드	㈜◇■	♣♣	X	
7	모바일웹하드	㈜◇目	♠♠	X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부적정

보호원은 토렌트(Torrent)¹³⁾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이하 “유통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2011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구축, 2017년 보호원에서 고도화)하고 있다.

10) 모니터링 대상 웹하드는 보호원 ©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누리집에 게시된 특수부가사업자(웹하드_P2P) 자료를 참고하여 신규 개설 웹하드를 추가하고 있고, 이 정보를 기초로 추적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11) 사이트접속→게시판 이동→목록검색→상세화면조회→화면캡처 기능 수행

12) 7일(중급개발자) 정도 소요되는 스크립트 개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스크립트 개발을 못하고 있음.

13) 토렌트는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사용자들 간에 서로 직접 공유하는 프로토콜(Protocol: 통신 시스템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칙) 또는 프로그램(Program)을 말함.

유통분석시스템은 긴급대응저작물¹⁴⁾로 지정해야할 영화정보는 종합상황실로부터 받고, 방송물 정보는 전자프로그램안내(EPG)¹⁵⁾(Electronic Program Guide)를 통해 수집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있으며, 토렌트 내 긴급대응저작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최초 유포 적발 정보(토렌트명, 게시글 제목, 업로드 시간, 파일 등 수집)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여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불법복제물 유포 상황을 종합상황실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종합상황실과의 연계와 자동 모니터링 대상 토렌트의 관리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영화정보의 수신, 토렌트 내 불법복제물 유포 적발 정보 송신을 위해 유통분석시스템과 종합상황실의 데이터베이스 연계 설정을 하면서 종합상황실의 영화 공공 데이터 테이블을 잘못 지정¹⁶⁾하여 영화에 대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결과¹⁷⁾가 종합상황실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유통분석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¹⁸⁾ 업데이트(Update) 실패(2019. 3. 2.) 이후 종합상황실과의 영화 공공데이터 연계가 중단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2019. 6. 4.)까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표 4]와 같이 영화에 대한 불법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4) 개봉일자(예정일자) 기준 한 달 이내 영화 저작물, 당일 방영시간 기준 하루 이내의 방송 저작물

15) 전자프로그램안내(EPG: Electronic Program Guide): 텔레비전 방송의 빈 주파수대나 부가채널을 이용해 TV프로그램 방송 시간과 내용 등을 보내 주는 방송 프로그램 안내 서비스

16) tm_killer_contents_movie와 tm_killer_contents_final로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상황실과 연계하는 시스템의 모니터링 대상은 개방일과 저작권사 정보를 포함하는 tm_killer_contents_final로 설정하여야 함

17)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은 저작물명으로 검색하므로 수집은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가 달라 영화에 대한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결과는 종합상황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고 있었음.

18) 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데이터의 추가, 변경, 삭제, 검색 등)하고, 응용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표 4]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결과 현황(2019. 5. 31. 현재)

구분	2018년	2019년	합계	비고
영화	845	281 ¹⁹⁾	873	
방송물	423	1,231	1,654	
합계	1,268	1,259	2,527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셋째, 스토리지(불법복제물 유통 화면 캡처 저장 등)의 용량 부족, 운영 서버의 메모리 부족 등을 이유²⁰⁾로 2019. 5. [별표 2]의 61개 토렌트²¹⁾ 중 [표 5]와 같이 6개 토렌트(8개 게시판)로만 모니터링 대상을 축소시켰고, 2018. 11. 스트리밍 사이트²²⁾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단하였다.

넷째, 위와 같이 6개 토렌트(8개 게시판)로만 모니터링 대상을 축소하고도 [표 5]와 같이 ‘♠♠’와 ‘♠♠1’은 접속이 차단되었고, ‘♣♣’는 접속주소가 변경되어 모니터링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다른 토렌트로 변경하지 않는 등 모니터링 대상 토렌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표 5] 모니터링 대상 토렌트 현황(2019. 5. 23. 현재)

연번	사이트명	사이트 URL	등록일	비고
1	♠♠		2019.04.24.	
2	♠♠		2019.04.16.	
3	♠♠1		2019.04.16.	접속차단
	♠♠		2019.04.16.	접속차단
4	♣♣		2019.04.12.	
5	♣♣2		2019.04.12.	
	♣♣		2019.04.11.	
6	♣♣		2018.12.10.	리다이렉트(Redirect) ²³⁾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19) 데이터베이스 오류(DBMS 업데이트 실패) 이전 모니터링 결과임

20) 2018년 고도화 이후 24개 토렌트(2018.11.28.) → 18개 토렌트(2019.2.24.) → 14개 토렌트(2019.4.15.) → 6개 토렌트(2019. 5. 중순) 모니터링 대상을 축소했으며, 스토리지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주 1회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삭제하고 있음.

21) 보호원 ©팀에서 매달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선정

22) 2019. 4월 기준 재택모니터링 대상 108개 사이트

23) 기존 접속주소(URL)로 접속 시도를 했을 때 변경된 접속주소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접근하게 하는 방법

다섯째, 토렌트에 긴급대응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원제목과 다르게 등록되는 경우 검색 및 식별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저작물 유의어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표 6]과 같이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등 5개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유의어를 등록하였고, 2018. 11. 29. 등록한 유의어 외에 최근 개봉 영화나 최근 방영 방송물의 제목에 대한 유의어는 추가하지 않고 있었다.²⁴⁾

[표 6] 유의어 관리 현황(2019. 5. 23. 현재)

연번	저작물명	유의어	구분	등록일
1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	방송	2018.11.29.
2	미시마:복수의 여신	○	방송	2018.11.29.
3	TV 동물농장	○	방송	2018.11.29.
4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	방송	2018.11.29.
5	TV는 사랑을 싣고	○ ○	방송	2018.11.29.

여섯째, 보도자료(2017년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발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은 토렌트(27.8%), 모바일(21.9%), 웹하드(17.9%) 순으로 토렌트가 가장 큰 데도 토렌트에서의 모니터링 대상 장르를 영화와 방송물에 국한하고 음악, 출판물, 게임물,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되어 있다.

다.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관리 및 운영 부적정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보호요청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상황을 해당 저작권자에 즉시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 긴급대응의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구축(2017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 비디오물, 출판물 등에 대한 정보 수집²⁵⁾ 편의 및 침해상황 대

24) 담당자는 모니터링 결과물의 다수 발생으로 시스템 부하가 발생하여 유의어를 삭제하여 관리하는 유의어가 적다고 밝혔으나, 현재 등록되어 있는 유의어는 2018년도 고도화 사업 완료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어와 동일하여 고도화 이후 유의어 관리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됨.

25) 음악 데이터는 가온차트로부터 받아 매주 수요일에 엑셀파일로 등록하고 있고, 만화 데이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데이터 연계 협의 중에 있음.

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표 7]과 같이 해당 공공데이터를 생산(보유)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 비디오물), 국립중앙도서관(출판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물) 등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

[표 7]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현황

기관명	정보명	연계시간	방법
국립중앙도서관	출판물데이터	매일 새벽 8시	오픈API ²⁶⁾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데이터	매일 새벽 8시	오픈API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 데이터	매일 새벽 7시	오픈API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저작권침해 사실 통지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종합상황실에 영화는 2019. 5. 15., 비디오물은 2019. 5. 24. 자료가 마지막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²⁷⁾,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경우 2019. 5. 15. 이후 5. 20., 5. 22., 5. 27. 등급분류 완료된 자료를, 비디오물의 경우는 2019. 5. 27. 등급분류 완료된 자료를 게시하고 있는 등 연계 점검²⁸⁾을 소홀히 하여 누락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종합상황실 담당자는 긴급대응물로 지정된 영화에 대해서 추적관리시스템과 유통분석시스템, 심의시스템으로부터 전달 받은 불법복제물 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진위 여부를 확인 후 보호 요청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침해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6)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직접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27) 출판물 데이터는 2019. 5. 27., 게임물 데이터는 2019. 5. 22.의 자료가 정상적으로 연계되어 있었음.

28) 종합상황실 접속기록 누적으로 WAS 서버의 디스크 사용률 90% 상회, 종합상황실 시연 준비 및 시스템 점검 작업 등으로 접속증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연계 접속 임계치(100건)를 초과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보호원은 업무 담당자(현재 1명²⁹⁾)가 저작권 침해사실 여부 확인 업무에 전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호요청 저작물에 대한 침해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못하고, [표 8]과 같이 대부분이 1일 이상 지체하는 등 실시간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표 8] 보호요청물 저작권 침해 통지 현황(2019. 5. 31. 현재)

시스템명	2018년			2019년			비고
	통보받은 건수	보호요청물		통보받은 건수	보호요청물		
		건수	1일이상 지연처리건수		건수	1일이상 지연처리건수	
추적관리시스템	5	2	0	18	11	11	
유통분석 시스템	-	-	-	-	-	-	
심의시스템	117	42	38	68	24	23	재택모니터링 결과
합 계	122	42	38	86	36	34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① 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담당 인력의 부족(현 1인)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장애, PC 재부팅(자동업데이트 등), 애플리케이션 장애, 대상 사이트 변경 시 스크립트 수정 등 수시로 발생하는 예외 사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는 물리적, 시간적인 제약으로 대응이 다소 미흡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 서버 자원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② 유통분석시스템 서버의 가용 용량을 확장하고 수집 서버 내 가상화 운영체제 환경을 증설하여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확대 및 음악, 출판, SW, 게임 등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에 대한 감시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전담인력을 추가하여

29) 간접적으로 업무를 대행해주는 운영업체 직원 등 2명에게 동시에 침해사실 메일이 전달되고 있으나, 해당 업무는 보호원 직원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음.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 현행화 및 유의어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③ 종합상황실 운영 서버(WEB, WAS, DB, 대시보드 등)의 디스크, 메모리 등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점검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① 웹하드, 토렌트 등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이 사각지대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현행화, 장애점검 및 즉각 조치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관련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 자원 증설,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모니터링 대상 웹하드 현황(2019. 4. 30.현재)

○ 일반 웹하드

연번	유형	업체명	사이트명	모니터링 여부	비고
1	P2P(웹하드)			○	
2	P2P(웹하드)			○	
3	P2P(웹하드)			○	
4	웹하드			○	
5	웹하드			○	
6	웹하드			○	
7	웹하드			○	
8	웹하드			○	
9	웹하드			○	
10	웹하드			○	
11	웹하드			○	
12	웹하드			○	
13	웹하드			○	
14	웹하드			○	
15	웹하드			○	
16	웹하드			○	
17	웹하드			○	
18	웹하드			○	
19	웹하드			○	
20	웹하드			○(에러)	
21	웹하드			○	
22	웹하드			○	
23	웹하드			○	
24	웹하드			○	
25	웹하드			○	
26	웹하드			○	
27	웹하드			○	
28	웹하드			○	
29	웹하드			○	
30	웹하드			○	
31	웹하드			○	
32	웹하드			○	
33	웹하드			○	
34	웹하드			○	
35	웹하드			○	
36	웹하드			○	
37	웹하드			○	
38	웹하드			X	
39	웹하드			○	
40	웹하드			○	
41	웹하드			○	
42	웹하드			○	
43	웹하드			X	
44	웹하드			X	

※ P2P 사이트 ‘♡♠’, ‘♡♣’, ‘♡♣’ 제외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 모바일 웹하드

연번	유형	업체명	사이트명	모니터링 여부	비고
1	P2P(웹하드)			O	
2	P2P(웹하드)			O	
3	웹하드			O	
4	웹하드			O	
5	웹하드			O	
6	웹하드			O	
7	웹하드			O	
8	웹하드			O	
9	웹하드			O	
10	웹하드			O	
11	웹하드			O	
12	웹하드			O	
13	웹하드			O	
14	웹하드			O	
15	웹하드			O	
16	웹하드			O	
17	웹하드			O	
18	웹하드			O	
19	웹하드			O	
20	웹하드			O	
21	웹하드			O	
22	웹하드			O	
23	웹하드			O	
24	웹하드			O	
25	웹하드			O	
26	웹하드			O	
27	웹하드			O	
28	웹하드			O	
29	웹하드			O	
30	웹하드			O	
31	웹하드			O	
32	웹하드			X	
33	웹하드			O	
34	웹하드			O	
35	웹하드			X	
36	웹하드			X	

※ P2P 사이트 '♡♠' 제외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2] 토렌트 사이트 현황(2019. 4. 30. 현재)

연번	업체명	사이트명	운영여부	신규	국적
1			무영	-	국외(캐나다) 국내(성남)
2			무영	-	국외(캐나다)
3			무영	-	국외(캐나다) 국외(중국)
4			무영	2017.09.11.	국외(캐나다)
5			무영	2017.11.28.	국내(서울)
6			무영	2018.03.02.	국외(캐나다)
7			무영	2018.04.25.	국외(캐나다)
8			무영	2018.04.25.	국외(캐나다)
9			무영	2018.05.28.	국외(캐나다)
10			무영	2018.06.26.	국외(캐나다)
11			무영	2018.08.01.	국외(캐나다)
12			무영	2018.08.01.	국외(캐나다)
13			무영	2018.08.01.	국외(캐나다) 국외(캐나다)
14			무영	2018.08.01.	국외(캐나다)
15			무영	2018.08.28.	국외(캐나다)
16			무영	2018.08.28.	국외(캐나다)
17			무영	2018.08.28.	국외(캐나다)
18			무영	2018.08.30.	국외(캐나다)
19			무영	2018.08.30.	국외(캐나다)
20			무영	2018.10.25.	국외(캐나다)
21			무영	2018.10.25.	국외(캐나다) 국외(캐나다)
22			무영	2018.10.25.	국외(캐나다) 국내(용인)
23			무영	2018.10.25.	국외(캐나다)
24			무영	2018.10.25.	국외(캐나다)
25			무영	2018.10.25.	국외(미국)
26			무영	2018.10.25.	국외(캐나다)
27			무영	2019.01.17.	국외(캐나다)
28			무영	2019.01.17.	국외(캐나다)
29			무영	2019.01.17.	국외(미국)
30			무영	2019.01.17.	국외(캐나다)
31			무영	2019.01.17.	국외(미국)
32			무영	2019.01.17.	국외(캐나다)
33			무영	2019.03.26.	국외(미국)
34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35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36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37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38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39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40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41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42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43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44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45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46			무영	2019.03.26.	국외(캐나다)

연번	업체명	사이트명	운영여부	신규	국적
47			운영	2019.04.25.	국외(캐나다)
48			운영	2019.04.25.	국외(싱가포르)
49			운영	2019.04.25.	국외(캐나다)
50			운영	2019.04.25.	국외(싱가포르)
51			운영	2019.04.25.	국외(캐나다)
52			운영	2019.04.25.	국외(싱가포르)
53			운영	2019.04.25.	국외(캐나다)
54			운영	2019.04.25.	국외(중국)
55			운영	2019.04.25.	국외(캐나다)
56			운영	2019.04.25.	국외(캐나다)
57			운영	2019.04.25.	국외(중국)
58			운영	2019.04.25.	국외(캐나다)
59			운영	2019.04.25.	국외(싱가포르)
60			운영	2019.04.25.	국외(미국)
61			운영	2019.04.25.	국외(일본)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기관 운영,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사업과 관련된 계약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호원이 2017년부터 2019. 5월말 사이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은 [별표]와 같이 총 51건(계약금액 계: 약 5,872백만 원)이며, 그 중 아래 [표]와 같이 공사가 포함된 계약은 총 3건(계약금액 계: 약 1,176백만 원)이다.

[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계약건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대표자)	주요 과업내용
1	공간환경개선 설계 및 설치 용역	2017.10.25.	220,000	(주)□□ (AA)	○보호원 4층, 9층 10층 일부 시설 및 면적 - 업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임원실, 기관홍보 이미지월 등, 부수 공간 일체의 디자인 설계, 설계도서 작성 및 설치
2	저작권침해대응 종합상황실	2018.06.29.	200,200	(주)□■	○보호원 4층

연번	계약건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대표자)	주요 과업내용
	구축 용역			(AB)	- 대시보드 전용서버, 통합제어시스템, LED DID Module, IP Wall 컨트롤러, PC, 가구 등 구매 및 설치
3	통합전산센터 구축 용역 (2019년 추진 중 사업)	2019.05.28.	755,700	(주)ABC (AC) (주)DEF (AD)	○통합전산센터 시설 구축 - 벽체, 바닥, 천정 등 기반 환경 공사 일체 ○서버실, 네트워크 환경 구성 -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설치 - 전기·소방설비 공사 및 건물 네트워크 공사 일체 ○ 기존시스템 이전 - 이전계획 및 신규 네트워크, 서버 구성도 수립 등 -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 관련 장비 이전 및 설치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입찰 공고기간 미준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4조 및 보호원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 2.1억 원 이하 경우 등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¹⁾하도록 되어 있고, 재공고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추정가격 2.1억 원 초과(추정금액-부가세)인 7건 중 5건(긴급입찰 1건, 40일 이상 1건 제외)의 공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설정하였고, 10일 이상 공고 대상(추정가격 2.1억 원 이하)인 ‘2017년 저작권보호 통계 전문지 C STORY 발간 및 배포 용역’ 등 11건의 공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찰로 재공고한 ‘한국저작권보호원 공간환경 개선 설계 및 설치용역’ 등 6건의 경우에도 공고기간

1) 입찰공고기간 설정 예) 입찰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1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1일) = 총 12일 소요



을 10일 미만으로 설정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을 국가계약법에 맞지 않게 설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충분한 공고기간을 부여되지 않는 등으로 전체 계약 51건 중 14건(약 27.4%)이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 사유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나. 건축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부적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원의 「계약사무처리규칙」은 국가계약법과 다르게 공사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보호원은 위 “1항” [표]의 3건의 경우 주요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예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공사원가 산출방식으로 작성)이 모두 실내 공간을 개선하는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는데도 공사 계약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다. 하자검사 미 실시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미정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하여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94조에 따르면 계약담

당자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원은 위 “1항” [표]의 공사가 포함된 3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1,266천 원 포함(원가계산서 내역 확인)되어 있으나 이를 정산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 신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원부서 인력 부족, 체계적인 교육 미흡 등으로 인한 행정미숙 등의 사유로 인해 집행계획 품의(제안요청서 작성 등 포함), 계약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입찰공고기간 운영 등 계약진행 과정 중 일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계약건에 대하여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 범위에 공사가 포함된 사항은 향후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동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 ①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분한 입찰 공고기간을 설정하고, 적격심사제 적용 대상인 공사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여 정기 하자검사가 누락되거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미정산한 채 대가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②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의 범위에서 적격심사 대상엔 ‘공사계약’은 제외되도록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 일)

연번	계약명	발주금액 (추정금액)	계약 금액	낙찰률	계약일	계약업체	최초 공고 기간	재공고 기간	공고기간 운영 현황	계약 체결방식			입찰결과		
										자체 발주	나라장터 (G2B) 활용	조달청 발주	최초 공고	재입찰 공고	최종
계	총 51건	6,320,854	5,871,535				평균 13.6일	평균 11.5일							
1	2017년 저작권보호 통계 전문지 C STORY 발간 및 배포 용역 계약	84,964	80,000	94.1	2017.02.06	주□■	8	-	10일 이상 미공고		○		낙찰		
2	2017 “저작권OK 리포터즈” 운영	60,000	59,367	98.9	2017.03.22	주□■	9	-	10일 이상 미공고		○		낙찰		
3	기관장 차량 운전원 파견 근로 용역 계약	30,261	30,261	100.0	2017.04.17	□■주	6	-	10일 이상 미공고		○		낙찰		
4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109,000	108,850	99.8	2017.04.28	주□■	8	10	10일 이상 미공고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5	온라인 저작물 보호 요청 및 조치 시스템 개발_심의시스템 개선	240,000	240,000	100.0	2017.04.28	주□■	13	-	40일 이상 미공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낙찰		
6	SW통계 등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116,000	110,000	94.8	2017.05.24	주□▲	12	-				○	낙찰		
7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전산자원 보안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14,850	14,850	100.0	2017.05.26	주□△	17	11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8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개발 용역	33,000	32,351	98	2017.05.30	주□▼	9	11	10일 이상 미공고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9	저작권OK 통합 홈페이지 개발 및 구축 용역	67,429	64,900	96.2	2017.06.02	주□■	13	-			○		낙찰		
10	2017년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94,359	83,836	88.8	2017.06.08	□▼주	15	-				○	낙찰		
11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	47,799	43,896	91.8	2017.08.16	주□◆	11	-			○		낙찰		
12	영상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용역	149,806	145,000	96.7	2017.08.17	주□◇	12	-				○	낙찰		
13	2017년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 관리 용역	110,800	92,400	83.3	2017.08.18	주□■	12	-				○	낙찰		
14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시스템 확대 구축	206,213	176,000	85.3	2017.08.30	주□▲	13	-				○	낙찰		
15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ICOTEC) 2017 행사 대행 위탁용역	72,271	72,000	99.6	2017.09.04	주□◆	11	-				○	낙찰		

연번	계 약 건 명	발주금액 (추정금액)	계약 금액	낙찰률	계약일	계약업체	최초 공고 기간	재공고 기간	공고기간 운영 현황	계약 체결방식			입찰결과		
										자체 발주	나라장터 (G2B) 활용	조달청 발주	최초 공고	재입찰 공고	최종
16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종합상황실) 구축 용역	209,211	200,200	95.7	2017.09.05	주□■	12	-				○	낙찰		
17	한국저작권보호원 공간환경개선 설계 및 설치용역	220,000	220,000	100.0	2017.10.25	주□□	19	9	재공고입찰 10일 이상 미공고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18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응용프로그램 재설치 및 이관 용역	19,541	18,480	94.5	2017.11.22	주□◆	10	9	재공고입찰 10일 이상 미공고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19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시스템 장비 및 SW 도입	250,335	242,742	96.9	2017.12.01	주□●	12	-	40일 이상 미공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낙찰		
20	저작권정보시스템 통합 IDC 임차 용역	184,800	132,000	71.4	2018.01.02	□○주	14	20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21	연차보고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27,000	26,800	99.2	2018.01.12	주□⑩	9	9	①10일 이상 미공고 ②재공고입찰 10일 이상 미공고		○		유찰	낙찰	
22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용차량 임차 용역 계약	79,200	79,200	100.0	2018.02.27	□○주	10	9	재공고입찰 10일 이상 미공고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23	2018 저작권 보호 통계 전문지 C STORY 발간 및 배포 용역 계약	86,915	78,244	90.0	2018.02.28	□●주	17	-			○		낙찰		
24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용역	92,675	77,000	83.1	2018.03.15	주□●	19	-				○	낙찰		
25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110,000	107,500	97.7	2018.03.19	주□●	16	-			○		낙찰		
26	2018 저작권 보호 리포터즈(가칭) 운영 용역	59,500	58,850	98.9	2018.04.04	주□●	21	-			○		낙찰		
27	2018년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 관리 용역	350,018	292,215	83.5	2018.04.05	주□目	37	-	40일 이상 미공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낙찰		
28	2018년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104,400	96,167	92.1	2018.05.09	주□●	12	-				○	낙찰		
29	2018년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행사대행 용역	95,801	90,400	94.4	2018.05.17	주□□	10	13				○	유찰	낙찰	
30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저작물 보호 연구 용역	209,803	196,900	93.8	2018.06.01	주□ㅁ	13	12				○	유찰	낙찰	
31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79,915	67,199	84.1	2018.06.05	주□ㅂ	10	-				○	낙찰		
32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ICOP-T) 고도화 및 운영	200,300	196,000	97.9	2018.06.25	주□▲	13	13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33	효율적인 저작권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센터 구축방안 연구	44,888	44,450	99.0	2018.06.27	□㉑	15	13				○	유찰	낙찰	
34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시스템	95,000	91,795	96.6	2018.06.21	주□㉒	15	11				○	유찰	유찰	수의

연번	계 약 건 명	발주금액 (추정금액)	계약 금액	낙찰률	계약일	계약업체	최초 공고 기간	재공고 기간	공고기간 운영 현황	계약 체결방식			입찰결과			
										자체 발주	나라장터 (G2B) 활용	조달청 발주	최초 공고	재입찰 공고	최종	
	기능개선 및 고도화															계약
35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용역	139,206	131,026	94.1	2018.06.29	(주)□■	21	12				○	유찰	낙찰		
36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ICOP-W) 기능 개선 및 고도화	241,000	215,695	89.5	2018.07.10	(주)□□	42	-				○	낙찰			
37	SW(폰트)점검도구 단속통계시스템 고도화	98,307	96,360	98.0	2018.07.19	(주)□■	14	14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38	한국저작권보호원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50,000	50,000	100.0	2018.08.14	(사)■□	9	10	10일 이상 미공고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39	저작권OK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	33,500	32,600	97.3	2018.08.16	(주)■□	26	9	재공고입찰 10일 이상 미공고		○		유찰	낙찰		
40	저작권 보호 웹툰 제작	40,500	39,690	98.0	2018.10.01	(주)■■	9	-	10일 이상 미공고		○		낙찰			
41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30,000	29,500	98.3	2018.10.05	(주)□□	9	-	10일 이상 미공고		○		낙찰			
42	한국저작권보호원 고객만족도 및 전환친절도 조사	24,750	23,000	92.9	2018.10.12	(사)■■	10	-				○	낙찰			
43	저작권 보호 캐릭터 제작	18,500	18,500	100.0	2018.10.16	(주)■■	8	12	10일 이상 미공고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44	디지털포렌식 SW 업그레이드 및 솔루션 도입	80,300	78,694	98.0	2018.12.19	(주)■■	11	-				○	낙찰			
45	저작권정보시스템 통합 IDC 임차 용역	66,000	66,000	100.0	2018.12.21	□○(주)	12	14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46	2019년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 관리 용역 사업	260,271	214,500	82.4	2019.03.27.	(주)□■	13	-	40일 이상 미공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낙찰			
47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용역	110,000	107,500	97.7	2019.04.03.	(주)□●	12	-				○	낙찰			
48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94,900	79,200	83.5	2019.04.09.	(주)□■	10	-				○	낙찰			
49	한국저작권보호원 망분리 구축	238,121	223,717	98.0	2019.04.23.	■□(주)	15	-	40일 이상 미공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낙찰			
50	디지털포렌식센터 표준운영절차 수립 컨설팅 용역	44,000	40,000	90.9	2019.05.16.	■□	6	9	①10일 이상 미공고 ②재공고입찰 10일 이상 미공고			○	유찰	유찰		수의 계약
51	통합전산센터 구축 용역	795,445	755,700	95.0	2019.05.28.	(주)□■ (주)□■	12	-	긴급입찰			○	낙찰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국고보조사업 정산 등 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2018년 민간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사)○■에 2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1,475백만 원(2018. 5. 10. 900백만 원, 2018. 12. 12. 575백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9. 4. 30. 정산보고서를 제출(○■-2019-138호)받아 집행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19. 6. 13. 보조금 정산 확정을 통보(보호원 ■■■팀-124호)하였으며, 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¹⁾

[표] 민간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사업 추진(2018. 4월~2019. 3월) 현황

(단위 : 백만 원)

보호원	(사)○■(간접 보조사업자)		수행업체·집행금액			비고
	세부사업내역	예산액	수행업체	집행액(계약액)	잔액	
보조사업 감독기관 및 보조금 지원	① 해외 침해대응 통합 모니터링 체계구축사업	967	○□ 등	966	1	
	② 해외 한국콘텐츠 유통 및 침해 현황 조사 용역사업	245	□Ⓞ	243	2	
	③ 국내외 민간 저작권 교류협력 체계구축사업	263	◇ⓧ	243	20	
	합계	1,475		1,452	23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1) 2017년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에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였음.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해 중앙 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과 적합 여부,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금액을 확정(정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및 위 사업관련 보호원의 국고보조금 교부조건(2018. 5. 10. 경영정보팀-1909호²⁾)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별 경비 배분을 변경해야 경우 보호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제1항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사)○■가 보조사업의 내역 및 예산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위 협회가 제출한 정산 증빙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등을 철저히 해야 하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호원은 [표]의 ②사업과 관련하여 “글로벌 해외 저작권보호 실태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보조금통합관리지침,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사” 사업을 “해외 저작권 보호관련 실태조사 모델개발 및 검증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메일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보호원, (사)○■ 3자간 협의를 해서 변경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문서를 시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보호원은 [표]의 ①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한 “모니터링 결과분석, 대응 사이트 및 도메인 분석 비용” 7,199,800원을 (사)○■가 보호원의 승인 없이 [표]의 ③사업비에서 임의로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조금의 금액을 정산 확정하였다.

그리고 보호원(간접보조사업자 (사)○■)은 2개 용역사업 결과물(웹툰 저작물 모니터링용역, 해외 저작권 보호관련 실태조사 모델개발 및 검증사업)을 인쇄물(보고서, 5부)³⁾과 파일로 제출 받아야 하는데도, 인쇄물이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를 정산과정에서 보완하지 않는 등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간접보조사업자 (사)○■는 [표]의 ①사업수행을 위한 2017년 독일 업체(○□)와 용역 계약서⁴⁾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⁵⁾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에 따라 위 협회는 용역사업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의 보조금 예산으로 납부⁶⁾한 바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사)○■가 부가가치세 대리납

3) 계약서에 따르면 웹툰 저작물 모니터링용역(보고서 제출), 해외 저작권 보호관련 실태조사 모델개발 및 검증사업(인쇄물 5부)

4) 간접보조사업자인 (사)○■가 계약 체결('17.8.2. 최초 계약, '18.3.31. 연장 계약, '19.1.1. 재연장 계약)

5) (사)○■는 2017. 7월경 문체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에 따라 2017.8월경 회계사에게 자문한 결과(e메일),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사)○■ 부담으로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도 부가가치세 63,636,390원을 납부하였음.

6) (사)○■는 계약 체결당시 용역계약금액 외에는 부가가치세의 미포함으로 관련 예산 내역 변경을 통해 납부함.

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런데 보호원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는 2018년 및 2019년 연장계약 시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2018년 용역수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82,122,250원을 2017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의 보조금으로 납부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사)○■에 재차 교부하는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업무의 미숙으로 부가세 대납, 용역사업 변경 관련 승인은 삼자간(문체부, 보호원, (사)○■) 이메일 협의 등을 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사업관리 및 정산 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내역은 면밀히 검토하였고, 향후 보조금사업 추진 시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조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① 국고보조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내용 변경, 보조금 임의 집행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 결과물을 정확하게 제출 받는 등 국고보조금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향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고보조금사업 정산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물품관리업무 소홀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라 한다)은 기관운영 및 저작권 보호활동 등을 위해 취득한 자산(물품) 4,191점(2019. 1. 1.기준)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호원 「자산관리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총괄관리자는 자산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월말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제32조에 따르면 유희(불용)자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총괄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관리자는 폐기하고자 하는 자산의 목록 등을 조사하여 원장의 승인 후에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정기재물조사 시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의 현황(존재, 수량, 상태, 불용 대상품)을 확인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 발생한 부족품, 불용대상품 등에 대해서는 재물의 조정, 손망실 처리,

불용 처리 등을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보호원은 2017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물품 존재 여부만 확인하고 불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이번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등 물품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기간 중 이동이 자유로운 일부 품목(개인 PC, 노트북,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989점을 샘플조사한 결과, [별표]와 같이 카메라렌즈 등 3개 품목은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디지털카메라 등 2개 품목은 물품관리대장과 실물 규격이 달랐으며, 데스크톱 컴퓨터 등 34개 품목은 노후화(내용연수 초과)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인데도 불용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물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① 앞으로 정기재물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재물조사 시에는 미사용 물품의 불용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샘플조사 결과 물품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카메라렌즈 등 3개 품목의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손망실 여부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규격 상이(2개 품목), 사용 불가능(34개 품목)은 착오 정정, 불용 결정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자산(물품) 확인 결과

물품소재 미확인 물품

연번	자산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내용연수
1	KCOPA-H-02-45121603-00012	CANON EF50mm 1.2L	카메라용렌즈 또는 카메라용 필터	2,596,000	2012.12.18.	8
2	KCOPA-H-02-45121504-00012	SONY-DSCRX100	디지털카메라	820,460	2014.01.01.	8
3	KCOPA-H-02-45121504-00014	SONY DSC-TX30	디지털카메라	542,087	2013.08.28.	8

물품관리대장과 실물 모델(규격) 상이 물품

연번	자산관리번호	물품명	자산관리대장상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내용연수	실제 규격
1	KCOPA-H-02-45121504-00014	CANON EOS 5D MARK II	디지털카메라	2,607,200	2011.01.01.	8	CANON 500D
2	KCOPA-H-02-43211503-00002	APPLE MAC PRO	노트북 / APPLE MACPRO	2,210,400	2011.01.08.	6	APPLE MAC

물품은 있으나 사용이 불가능(불용)한 물품

연번	자산관리번호	물품명	규격	취득단가(원)	취득일자	내용연수
1	KCOPA-H-02-43211507-00064	조립PC	데스크톱 / G.M.C	1,100,000	2013	5
2	KCOPA-H-02-43211507-00092	6260KR	데스크톱 / HP P6260kr	1,100,000	2009	5
3	KCOPA-H-02-43211902-00071	FLATRONL1720B	LCD모니터 / LG FLATRON L1720B	250,000	2007	5
4	KCOPA-H-02-43211902-00072	FLATRONL1720B	LCD모니터 / LG FLATRON L1720B	250,000	2007	5
5	KCOPA-H-02-43211902-00073	FLATRONL1720B	LCD모니터 / LG FLATRON L1720B	250,000	2007	5
6	KCOPA-H-02-43211902-00104	FLATRONL1720B	LCD모니터 / LG FLATRON L1720B	250,000	2007	5
7	KCOPA-H-02-43211902-00138	FLATRONL1720B	LCD모니터 / LG FLATRON L1720B	250,000	2007	5
8	KCOPA-H-02-43211902-00123	FLATRONL1720B	LCD모니터 / LG FLATRON L1720B	250,000	2007	5
9	KCOPA-H-02-43211902-00069	FLATRONL1720B	LCD모니터 / LG FLATRON L1720B	250,000	2007	5
10	KCOPA-H-02-43211902-00118	FLATRONL1720B	LCD모니터 / LG FLATRON L1720B	250,000	2007	5
11	KCOPA-H-02-43211902-00070	FLATRONL1720B	LCD모니터 / LG FLATRON L1720B	250,000	2007	5
12	KCOPA-H-02-43211902-00164	FLATRONL194WT	모니터 / LG FLATRON Wide L194WT	210,000	2007	5
13	KCOPA-H-02-43211902-00049	FLATRONL194WT	LCD모니터 / LG FLATRONWideL194WT	210,000	2007	5
14	KCOPA-H-02-43211902-00114	FLATRONL194WT	LCD모니터 / LG FLATRON Wide L194WT	210,000	2007	5
15	KCOPA-H-02-43211902-00050	FLATRONW2453V	LCD모니터 / LG FLATRONW2453V	400,000	2011	5
16	KCOPA-H-02-43211902-00020	FLATRONW2453V	LCD모니터 / LG FLATRON W2453V	400,000	2011	5
17	KCOPA-H-02-43211902-00185	FLATRONW2453V	LCD 모니터 / TG TGL-6800V 27인치	400,000	2009	5
18	KCOPA-H-02-43211902-00115	FLATRONW2453V	LCD모니터 / LG FLATRONW2453V	400,000	2011	5

19	KCOPA-H-02-43211902-00010	FLATRONM2762D	LCD모니터 / LG FLATRON 2762D	409,000	2011	5
20	KCOPA-H-02-43211902-00065	SoncMaster2243BWX	LCD모니터 / 삼성 SyncMaster2443BWX	404,250	2009	5
21	KCOPA-H-02-43211902-00146	SoncMaster2443BW	LCD모니터 / 삼성 SyncMaster2443BWX	404,250	2009	5
22	KCOPA-H-02-43211902-00148	SoncMaster2443BW	LCD모니터 / 삼성 2443BWX	404,250	2009	5
23	KCOPA-H-02-43211902-00019	SoncMaster2433BW	LCD모니터 / 삼성 SyncMaster223BW	328,000	2008	5
24	KCOPA-H-02-43211902-00074	SoncMaster2433BW	LCD모니터 / 삼성 SyncMaster223BW	328,000	2009	5
25	KCOPA-H-02-43211902-00064	SoncMaster225BW	LCD모니터 / 삼성 SyncMaster225BW	210,000	2007	5
26	KCOPA-H-02-43211902-00076	SoncMaster2494HS	LCD모니터 / 삼성 SyncMaster2494HS	328,000	2009	5
27	KCOPA-H-02-43211902-00062	TLED24H2	LCD모니터 / Alphascan TLED24H2	300,000	2011	5
28	KCOPA-H-02-43211902-00151	K230FE	LCD모니터 / TG K230FL	291,500	2013	5
29	KCOPA-H-02-43211501-00008	THINKPADW520	노트북 / THINKPADW520	2,200,000	2010	6
30	KCOPA-H-02-43211503-000434	THNKPADX220	THNKPADX220	2,822,850	2010	6
31	KCOPA-H-02-43211503-00021	THNKPADX200 타블렛	노트북 / 레노버X201(Tablet)	2,822,850	2010	6
32	KCOPA-H-02-43211503-00048	NT-RF510	노트북 / 삼성 NT-RF510	1,381,000	2009	6
33	KCOPA-H-02-43211503-00038	2530P	노트북 / HP 2530P	1,508,100	2010	6
34	KCOPA-H-02-43211503-00012	도시바C840	노트북 / 도시바 C840	562,790	2012	6
합계	34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제 목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2018년부터 구로 및 상암 IDC¹⁾(인터넷데이터센터)에 분산 운영 중인 전산자원을 통합하기 위해 2018년부터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2019년 예산: 1,800백만 원)”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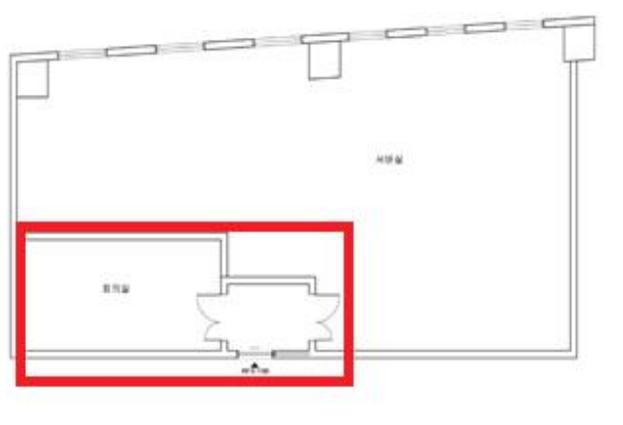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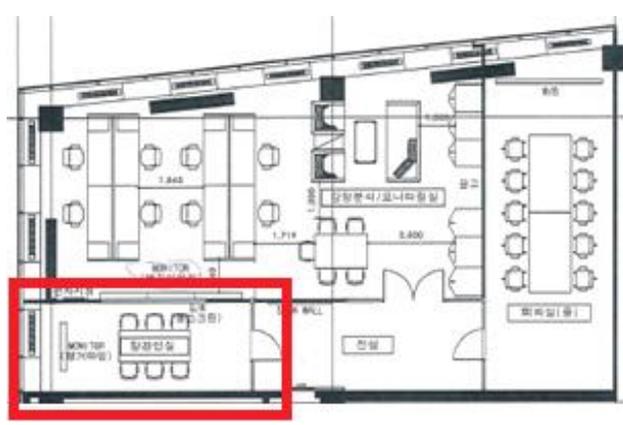
그리고 보호원은 상주하고 있는 건물인 서울산업진흥원 9층 사무공간(901호)에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고자 2018. 8. 27. 통합전산센터 임차비용(32백만 원)과 공사비(44백만 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2018. 10. 25. 위 901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12월에는 위 901호 일부 공간에 통합전산실 공간을 구획하면서 회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구획 내에 회의실, 전실, 자동 출입문 등을 설치하였다²⁾.

1) 상암IDC는 현재 (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2)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전산실 구획 조성 및 환경개선 용역(계약기간: 2018.11.26.~2018.12.14./ 계약금액: 12,430천 원)”

그 후 보호원은 공용공간 축소 등에 대한 노사 협의 불발,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 공간의 현 사무공간 내 우선 배치 필요 등을 사유로 2019. 4. 18. 서울산업진흥원 인근 건물인 ‘◇▲(관리기관: ◇□ 산하 공공기관인 ◇⊕)’ 9층을 임차(2019. 6월~2021. 5월)하여 이 곳에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하고 기존에 임차한 서울산업진흥원 건물의 901호는 아래 [표 1]과 같이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관련문서: 탐탐-1390)

[표 1] 서울산업진흥원 9층(901호) 활용 관련 설계도면 비교

	
<p>통합전산센터 구획(901호) 시공도면(현재)</p>	<p>디지털포렌식센터 설계도면(향후 구축안)</p>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보조사업 내용변경에 대한 문체부 승인절차 미이행 등

2019. 1. 18. 보호원이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에는 통합전산센터 구축 장소는 보호원의 상주건물인 서울산업진흥원 9층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관련문서: □과-354)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원이 통합전산센터의 구축장소 및 예산내역 등을 변경³⁾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체부(□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2019. 4. 18. 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임차공간 변경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원장 결재⁴⁾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구축 장소의 적정성, 기존 임차건물의 조속한 활용방안 등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및 예산낭비 방지방안 등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⁵⁾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 사무실 임차, 용역 계약 등 변경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존 임차건물(서울산업진흥원 901호: 161㎡)의 경우 매월 6,779,737원이 임차관리비로 지불되고 있으면서도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회의실(20㎡) 외 나머지 공간(141㎡)은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⁶⁾

나. 입찰참가자격 등 관련법령 검토 미흡

보호원이 2019년 3월에 통합전산센터 구축 용역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당시 작성한 예정원가 계산내역 중 순구축비(순공사비)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통합전산센터 구축 용역 예정원가 계산내역 중 순구축비 현황(이윤 등 제외)

세부항목 구분	구분	원가계산금액	비 고
---------	----	--------	-----

3) 통합전산센터 구축장소 변경은 향후 추진 예정인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과 관련되어 있고, 임차료 증액(81,480천 원→94,718천 원), 공사비 변경 등이 수반됨

4) (결재선) 경영지원팀장→원장, 협조자: 정보화팀장, 디지털포렌식팀장, 현장대응국장

5) 보호원은 2019. 3. 30. 현안점검 회의 때 통합전산센터 구축 장소의 변경 등에 대해 문체부와 논의하였다고 하나, 당시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과 과장과 담당사무관은 그때서야 전기공사 추가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점을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함.

6) 기존 임차장소(901호)가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 장소로 본격적으로 사용된다면 원가계산,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등 계약 체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기존 임차장소 중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공간에 대한 해결방안(활용방안 등)이 필요한 실정임.

	(물품, 용역, 공사)	(원)	
합계		876,838,456	
①전원설비공사(무정전 전원설비)	물품, 전기공사	100,502,716	재입찰 의뢰 시 분리 발주
②전기케이블공사	전기공사	64,303,504	
③항온항습기 설치	물품, 용역	50,399,182	재입찰 의뢰 시 분리 발주
④인테리어 시공	전문공사	105,497,776	
⑤소방설비 시공	소방공사	12,202,879	
⑥통신케이블 공사	정보통신공사	50,197,382	
⑦접지설비 설치	전기공사	3,799,284	
⑧관제모니터 구축	물품, 용역	13,224,208	
⑨보안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	10,308,379	
⑩설비관제시스템(FMS) 구축	물품, 정보통신공사	27,457,290	
⑪네트워크 장비 도입	물품	198,363,632	
⑫정보보안 장비 도입	물품	96,569,236	
⑬인프라 모니터링 장비 도입	물품	128,040,000	
⑭현황조사 및 분석	용역	313,574	
⑮준비 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용역	1,791,166	
⑯시스템 이전 실행	용역	7,950,825	
⑰시스템 이전 종료 단계	용역	5,917,423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보호원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 예규)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고려하여 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일괄 또는 분리 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원은 타 지역의 분산된 서버의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9.

3. 13. 긴급입찰로 발주(조달청 계약 의뢰) 했는데도, 판로지원법 등 관련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①, ③항목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대상 제품 조달청 지정 후 공공기관 통보)을 통합하여 발주 하였고, 그에 따른 재검토 기간이 소요⁷⁾됨에 따라 결국 당초 긴급입찰을 해야

7) 조달청에서 발주서류 검토 결과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제품(무정전전원설비, 항온항습기)은 분리 발주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재검토(4. 23. 발주내용 재검토 내부결재) 하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입찰공고(5. 6. ~5. 16.)가 지연됨.

하는 취지와 다르게 지연되었다.

또한 보호원은 ②, ⑦항목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 예외사유(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⁸⁾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전기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였고, ⑤항목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했어야 했는데도, 2019. 5. 28.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계약상대자(주○□□, 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향후 계약 업무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의 분리 발주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계약실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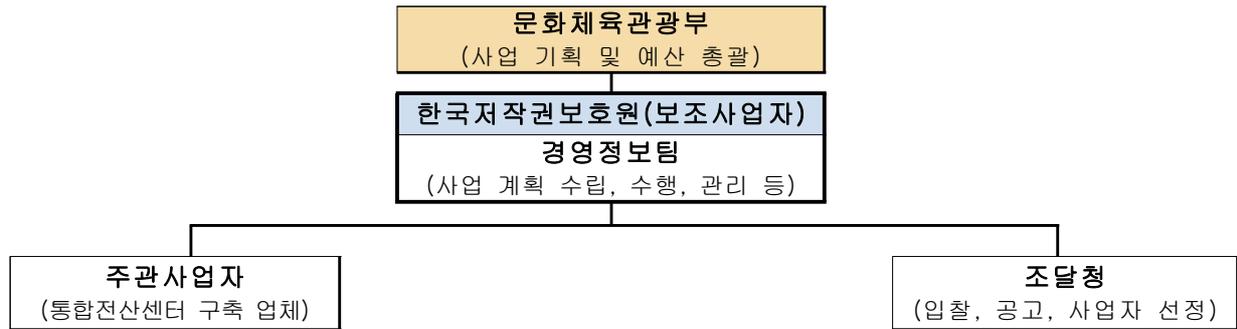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하도급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등의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도록 계약

8)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발주 예외사유 법령해석내용)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란 전기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어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시설물의 내용적 성질을 분리하여서는 그 자체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①전력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②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③발전소의 주설비공사, ④입시가설공사, ⑤국가안보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들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써 기술관리 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급히 복구가 필요한 공사로 분리하여 시공하여서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곤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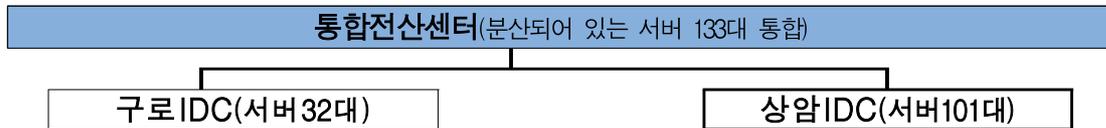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통합전산센터 구축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2019년
- 2019예산: 1,800백만원
 - * 2018년 집행액: 임대료·관리비(7개월 분) 44백만 원, 통합전산실 기획 조성 및 환경개선 12백만 원
- 추진체계



○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설 정비	○ 통합전산센터 신규구축 관련 벽체, 바닥, 천정 등 기반환경 공사 일체
서버실, N/W 환경 구성	○ 향온향습기 및 무정전 전원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설치 ○ 전기·소방 설비 공사 및 건물 네트워크 공사 일체
기존 시스템 이전	○ 이전계획 및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 장비 이전 및 설치

○ 추진현황

- (2018. 10월) 통합전산센터 사업 확정, 서울산업진흥원 임대차 추가 계약 체결
 - * 서울산업진흥원 9층 사무공간 중 일부 901호(161㎡, `18.11.16.~`20.1.31.)
- (2019. 1월) 정보화관리 업무 연간계획 수립 및 보안성 검토 신청(보호원→문체부)
- (2019. 1월) 통합전산센터 구축 용역 사업 추진(내부결재)
- (2019. 2월) 보안성검토 결과 통보(국정원→보호원)
- (2019. 2월) 보안성 검토결과 조치의견 회신(보호원→문체부)
- (2019. 2~3월) 원가계산
- (2019. 3월) 조달청 발주 의뢰, 사전규격공개(3.15~21)
 - * 3. 25. 조달청 2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제품(향온향습기, 무정전 전원설비) 분리발주 의견 통보
- (2019. 3~4월) 임차공간 활용방안 재검토(4.18./ 디지털포렌식센터 추축 공간 및 직원 휴게공간 조정 등), 조달청 검토의견에 따른 발주계획 변경(4. 19.) 및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입주 신청(4. 23.)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층 일부(전체 면적: 444.86㎡, 전용면적 50%, `19.6.1. ~ `21.5.31.)
- (2019. 4월) 조달청 발주 재의뢰(4. 19.), 사전규격 재공개(4.23~4.26)
- (2019. 5월)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임대차 계약 체결(5. 3.)
 - * 인테리어 공사기간(5. 2.~5.31.) 동안 임대료 무상 제공 조건
- (2019. 5월) 입찰공고(5.3.~5.16.), 온라인평가(5.21.), 기술협상(5.23.), 계약체결(5.28.)

자료 :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제 목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사업 근로자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로부터 국고보조금¹⁾을 지원받아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사업”(이하 “재택모니터링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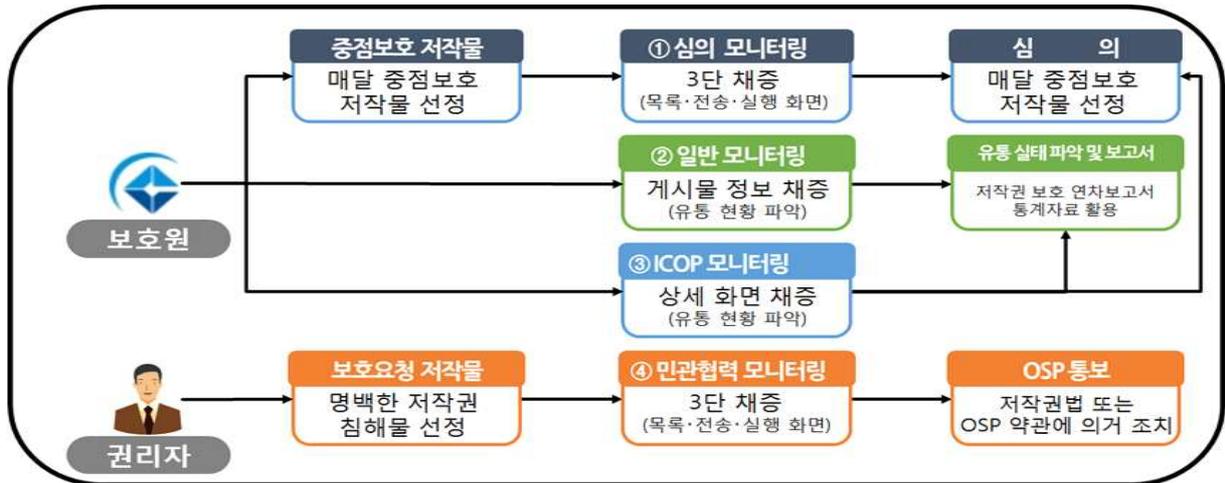
그리고 보호원은 [별표 1]과 같은 근무조건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등을 기간제 근로자(이하 “모니터링요원”이라 한다)로 채용²⁾하여 주·야간·심야 등 시간대 별로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채증자료로 활용되는 등 저작권 침해 대응³⁾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 (예산 현황) '16년 4,356백만 원, '17년 3,706백만 원, '18년 4,091백만 원, '19년 5,416백만 원

2) (연도별 채용현황/ 최종 채용인원 기준) '16년 311명, '17년 286명, '18년 335명, '19년 386명

3) (침해대응 내용) 시정권고, 민관협력조치, 접속차단, 광고차단, 검색 제한조치, 상습 저작권 침해자 수사 지원 등

[표 1] 재택모니터링 사업 업무처리 흐름도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재택모니터링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인터넷 사이트)을 활용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보호원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서, 보호원은 모니터링요원이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별 근무시간, 결근 및 조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근태관리 및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보호원의 「모니터링 재택 근로자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모니터링요원이 [별표 1]의 근무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고조치를 하고,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별표 2]와 같이 2016~2018년 기간 동안 모니터링요원의 복무현황을 확인한 결과, 근무기간 중 총 3회를 초과하여 지각 98명, 무단결근 6명, 무단조퇴 2명 등 근무태도가 양호하지 못한 근로자(이하 “근태불량자”라 한다)가 총 106명에 달하고 있는데도, 보호원은 2017년에만 근태 불량자 14명 중 7명을 경

고조치하였을 뿐, 2016년 및 2018년의 경우 근태불량자 92명 중 단 한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특성상 재택 근로자의 상당수가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매뉴얼 상의 경고사유는 마련되어 있으나, 향후 3년간의 운영 성과와 복무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부기준 등을 보강하고 규정 제정 등 전반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재택모니터링 사업 근로자 근무조건

구 분	재택 근무자 구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차상위		청년	
채용기간	약 10~11개월			
	※ 공통적용사항 :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기간 연장 없음			
보 수	100만원 내외/월		120만원 내외/월	
근무형태	주5일 근무(주중 4일, 주말 1일) 1달 20일 근무		주5일 근무(주중 5일) 1달 20일 근무	
	주간	근무시간 : 10시~16시 (1일 5시간 근무)	주간	근무시간 : 10시~17시 (1일 6시간 근무)
	야간	근무시간 : 19시~24시 (1일 4시간 근무)		
	심야	근무시간 : 01시~04시 (1일 3시간 근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는 소득세, 주민세 및 4대 사회보험료(의무 가입) 등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 ○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2] 재택근로자 복무 현황(3회 초과 지각자·무단결근자·무단조퇴자 및 경고조치 현황)

연도	구분	최종 채용 인원	3회 초과 지각자 (중복 포함)	3회 초과 무단결근자 (중복 포함)	3회 초과 무단조퇴자 (중복 포함)	경고조치 현황		퇴사 여부
						경고자	사유	
2016	장애인	196	AE(9), AF(4)	-	-	-	-	-
	경력단절여성	97	AG(4), AH(5), AI(4), AJ(4)	-	-	-	-	-
	다문화	13	-	-	-	-	-	-
	차상위	5	-	-	-	-	-	-
	청년	0	-	-	-	-	-	-
	소계	311	6명	-	-	-	-	-
2017	장애인	142		AK(4) AL(11)	-	-	-	-
	경력단절여성	101	AM(5)	-	-	AM	근무태만	-
	다문화	7		-	-	-	-	-
	차상위	1		-	-	-	-	-
	청년	35	AN(7), AO(8), AP(7), AQ(6), AR(8), AS(8), AT(6), AU(14), AV(7), AW(7), AX(14)	AV(2)	-	AO AS AT AV AW AY (경고2회)	근무태만(찾은 지각) 근무태만 지참(총 6회) 무단결근(2회) 산출물 미제출 등 근무태만 및 지시불이행	AY
	소계(중복 제외)	286	12명	2명	-	-	-	-
2018	장애인	190	AZ(4), BA(4), BB(4), BC(4), BD(4), BE(4), BF(4), BG(5), BH(5), BI(5), BJ(5), BK(5), BL(6), BM(6), BN(6), BO(6), BP(7), BQ(7), BR(7), BS(8), BT(8), BU(9), BW(10), BV(10), BX(10), BY(10), BZ(11), CA(12), CB(12), CC(13), CD(14), CE(14), CF(14), CG(14), CH(15), CI(15), CJ(20), CK(28), CL(30), CM(37), CN(3), CO(3)	BD(1) BH(1) BJ(2) BR(1) CJ(1) CO(1) AZ(4) CG(4) CP(4) CN(6)	BA(1) BJ(2) BL(1) BM(3) BR(3) BX(1) BY(1) CE(1) CH(1) CL(1) CO(4) CJ(6) CQ(5) CR(6)	-	-	CB CL CQ
	경력단절여성	102	CS(4), CT(4), CU(4), CV(4), CW(4), CX(4), CY(4), CZ(5), DA(5), DB(5), DC(5), DD(5), DE(5), DF(6), DG(6), DH(6), DI(8), DJ(8), DK(8), DL(10), DM(10), DN(18), DO(22), DP(23), DQ(24), DR(26), DS(28), DT(30)	CS(2) DA(1) DQ(2) DR(3) DS(2)	DM(2) DN(2) DP(3) DT(2)	-	-	-

연도	구분	최종 채용 인원	3회 초과 지각자 (중복 포함)	3회 초과 무단결근자 (중복 포함)	3회 초과 무단조퇴자 (중복 포함)	경고조치 현황		퇴사 여부
						경고자	사유	
	다문화	4	DU(9), DV(6), <u>DW(9)</u> , DX(9), <u>DY(9)</u>	<u>DW(1)</u> <u>DY(2)</u>	-	-	-	DY
	차상위	11		DZ(9)	-	-	-	
	청년	28	EA(4), <u>EB(7)</u> , EC(8), <u>ED(12)</u> , EE(14)	EF(4)	-	-	-	EB ED
	소계(중복 제외)	335	80명	4명	2명	-	-	-
합계(중복 제외)		932	98명	6명	2명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제 목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보호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 기관장에게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외부강의등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청탁금지법」 제10조, 보호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원 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원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호원의 「복무규칙」 제12조, 제24조에 따르면 직원은 1일 8시간(9

시~18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연가·외출·조퇴 또는 출장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원 소속 직원은 근무시간 내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복무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외부강의등 신고 실태(2016. 1월~2019. 4월)를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직원 1명은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후신고(1건)를 하였고, 직원 4명은 외부강의등의 사유로 출강하면서 결재권자로부터 연가·외출·조퇴 또는 출장 등에 대한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10건)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보호원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외부강의등 사전 미신고 및 복무처리 부적정 내역

구분	성명	당시 소속	직급	외부강의일자 (신고일자)	외부강의 시간	외부강의 요청기관	복무처리 현황
사전신고 의무위반	EG			2018.09.12. (2018.09.20.)	13:00~17:30		연가
복무처리 부적정	EG			2017.11.23.	14:00~16:00		없음
				2018.02.22.	14:00~16:00		없음
	EH			2017.03.08.	14:00~17:00		없음
				2017.04.27.	16:00~17:00		없음
				2018.03.15.	15:30~17:00		없음
	EI			2018.11.05.	14:00~18:00		없음
				2019.02.19.	10:00~12:00		없음
				2019.04.05.	14:00~17:00		없음
				2019.04.29.	14:00~16:30		없음
	EJ*			2018.06.19.	15:00~17:00		없음

* 퇴사(2018.10.30.)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위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향후 직원 대상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복무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① 직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회의 등에서의 강의·강연을하고자 할 경우, 사전신고 및 적정한 복무처리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관리하고,(주의)

② 사전신고 의무 위반, 복무 부적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직원(3명)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개인주의)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제 목 직원 출근 관리 및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직원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내부 지침인 「복무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고, 입구에 설치된 근태관리시스템(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을 통해 보호원 직원의 출·퇴근, 초과근무, 휴일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보호원 「복무규칙」 제17조(출근), 제18조(결근과 지참)에 따르면 직원은 지정된 시무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직원이 지정된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참으로 하며, 14:00 이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0조(지참, 조퇴 및 외출의 처리)에 따르면 직무수행이나 질병 또는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직원의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보호원 직원들의 출근 현황(2018. 8. 1.~2019. 4. 30.)을 점검한 결과, [별표]와 같이 2018년 53명의 직원이 133회 지각, 2019년 27명의 직원이 82회 지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와 같이 일부 직원은 출·퇴근 시 지문인식을 하지 않는 등 직원의 복무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었다.

[표] 출퇴근 미인식 현황

연도	출근 미인식	퇴근미인식	비고
2018년	9건(4명)	49건(21명)	
2019년	12건(8명)	41(18명)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보호원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지각한 직원들이 많은데도 지각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자주 지각하는 직원에게 주의·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보호원은 「복무규칙」에 따라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 시 지각, 조퇴, 외출을 합산하여 누적 8시간 시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지각을 제외한 조퇴 및 외출 시간만을 누적 합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한 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위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2018년도 지각일수를 2019년 연가일수에 포함시켜 연가보상비를 산정하고, 향후 지각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주의·경고 조치하는 등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① 향후 상습적인 지각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의)

② 위 기간 중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지각한 직원(6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별표] 직원 개인별 지각 현황

○ 2018. 8월~2018. 12월 지각 현황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지각횟수	지각내역	
					시간	분
1				4	4	16
2				1	0	48
3				1	0	43
4				2	2	16
5				3	1	56
6				1	5	10
7				3	0	13
8				3	0	59
9				1	0	2
10				1	5	10
11				1	0	44
12				1	0	28
13				2	0	20
14				1	0	22
15				3	7	20
16				1	0	25
17				1	0	5
18				5	1	17
19				5	0	12
20				9	8	9
21				13	1	10
22				4	0	17
23				2	0	3
24				2	0	3
25				2	2	54
26				2	0	40
27				1	0	33
28				1	0	41
29				2	0	2
30				1	0	22
31				1	0	53
32				1	0	10
33				1	1	7
34				2	0	53
35				1	1	51
36				1	1	1
37				1	2	18
38				1	0	18
39				1	0	44
40				1	0	8
41				13	5	42
42				2	0	4
43				5	0	17
44				1	0	4
45				1	0	1
46				1	0	57
47				1	0	1
48				1	0	8
49				8	1	11
50				1	0	55
51				1	0	56
52				6	0	21
53				2	2	56

○ 2019.1월~2019. 4월 지각 현황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지각횟수	지각내역	
					시간	분
1				1	2	19
2				1	5	5
3				1	0	4
4				1	0	5
5				1	0	3
6				3	0	44
7				3	5	1
8				2	0	6
9				13	0	48
10				4	0	28
11				2	0	14
12				1	2	20
13				1	0	6
14				9	2	49
15				2	1	30
16				1	0	2
17				1	0	6
18				1	0	1
19				1	0	2
20				1	0	1
21				12	0	54
22				1	0	1
23				1	0	47
24				3	0	26
25				7	0	57
26				6	0	22
27				2	1	49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 2018. 8. 1.부터 직원 연가현황(연차, 외출, 반차 등)이 근태관리시스템(지문인식 출퇴근기록기)과 그룹웨어에 연동됨에 따라, 그 이후 복무사항만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

제 목 계약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기관 운영 및 저작권 침해 대응 및 보호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자체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물품 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를 누락하고 수의계약 추진

보호원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기관 운영을 위한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제26조 제1항 제5호가

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¹⁾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원은 2016년 “ICOP 상황실 이전 설치 관련 사무실 조성 및 환경개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지 않고 용역업체들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표 1]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사무실 조성 및 환경개선 공사” 사업 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연도	계약명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자	업체 견적서 제출금액
2016	ICOP 상황실 이전 설치 관련 사무실 조성 및 환경 개선 공사	2016.11.21.~ 2016.11.28.	36,390	36,390	○㉮	○㉮: 36,390 ○㉮: 38,400 ○㉮: 41,170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예정가격(산출내역)의 작성 없이 견적금액만으로 수의계약

보호원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책임자 등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위 예정가격조서에는 산정자의 서명을 포함한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팀장-부서장-원장의 순으로 결재하여야 한다.

또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33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²⁾, 제40조

1) 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2)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따라서 보호원은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이 인지세⁴⁾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계약서에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천만 원 이상 계약 총 37건을 체결하면서 [별표]와 같이 수입인지(80만 원)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⁵⁾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향후 물품 구매·용역 등 계약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고,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징구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향후 전자조달시스템 공고, 예정가격 작성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인지세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0억이하 15만원)

5) 계약서를 체결 당시에 인지세를 징구해야 하였으나, 이미 종결된 사항으로 추가 징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미비

[별표] 수입인지 미징구 계약 체결 명세(2016. 11. 1.~2018. 12. 31.)

연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 원)	계약자	계약 방식	수입 인지
총계		37건				총 80만원
2018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2018.01.25.~ 2018.02.15.	11,550	○◇	수의	2만원
	2018 국제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총괄대행(PCO) 용역	2018.04.18.~ 2018.05.18.	18,860	(주)○㉔	수의	2만원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2018.05.31.~ 2018.07.30.	20,000	○○◎	수의	2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2018.06.12.~ 2018.09.11.	19,800	(주)○●	수의	2만원
	저작권 보호 교육 만화 제작 용역	2018.08.16.~ 2018.09.04.	15,000	(주)○●	수의	2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2018.08.28.~ 2018.11.25.	50,000	(사)■□	경쟁→ 수의	4만원
	현장조사팀 수사단속통계시스템용 리포팅 솔루션 구매	2018.09.07.~ 2018.09.26.	19,690	(주)○●	수의	2만원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호스팅	2018.09.01.~ 2018.12.31.	12,000	○■	수의	2만원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W) 기능개선 및 고도화 감리용역	2018.10.02.~ 2018.12.05.	19,800	(주)○●	수의	2만원
	저작권 보호 캐릭터 제작	2018.10.16.~ 2018.12.20.	18,500	(주)■㉔	경쟁→ 수의	2만원
	보호원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2018.10.16.~ 2018.11.15.	12,540	(주)○●	수의	2만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검색시스템 구축	2018.10.24.~ 2018.12.11	19,978	(주)□㉔	수의	2만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검색솔루션 설치 및 지원	2018.10.24.~ 2018.12.11	10,890	(주)○㉔	수의	2만원
	디지털 포렌식 역량강화 교육(정보유출사고 조사과정)	2018.12.11.~ 2018.12.14.	14,000	(주)○㉔	수의	2만원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W) 백업 및 전산자원 모니터링 솔루션 유지관리	2019.01.01.~ 2019.12.31.	14,693	(주)□㉔	수의	2만원
	웹툰통계분석 서비스 계약서	2018.12.19.~ 2019.12.18	13,068	○㉔(주)	수의	2만원
소계		16건				34만원
2017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연장 계약	2017.01.16.~ 2017.03.31.	18,000	(주)■■	수의	2만원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전산자원 보안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2017.05.26.~ 2017.06.30.	14,850	(주)□△	경쟁→ 수의	2만원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개발 용역	2017.05.30.~ 2017.08.31.	32,351	(주)□▼	경쟁→ 수의	4만원
	온라인 저작물 보호요청 및 조치시스템 개발 / 심의시스템 개선 사업 감리용역	2017.06.12.~ 2017.11.30.	15,000	(주)■□	수의	2만원
	2017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총괄대행	2017.07.13.~ 2017.10.31.	19,497	(주)■□	수의	2만원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2017.07.18.~ 2017.09.18.	20,000	■㉔	수의	2만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SW 유지보수	2017.08.01.~ 2017.12.31.	12,760	(주)■㉔	수의	2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 과학수사 등	2017.09.11.~	14,938	(주)■㉔	수의	2만원

연도	계 약 명	계약 기간	계약금액 (천 원)	계약자	계약 방식	수입 인지
	사업홍보	2017.10.27.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용역 계약	2017.10.12.~ 2017.12.20.	25,620	(주)■□	경쟁	2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공간환경개선 설계 및 설치 감리용역	2017.11.02.~ 2017.12.20.	11,000	(주)■□	수의	2만원
	교육기관용 폰트SW 인스펙터 확대 구축	2017.11.15.~ 2017.12.13.	19,900	(주)□▲	수의	2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7년도 한국저작권보호원 고객만족도 조사	2017.11.22.~ 2018.01.26.	14,100	(주)■▲	수의	2만원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응용프로그램 재설치 및 이관 용역 계약	2017.11.22.~ 2017.12.21.	18,480	(주)□◆	경쟁→ 수의	2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BIZBOX 기능개선 계약	2017.11.23.~ 2017.12.16.	24,992	(주)○□	수의	2만원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사업 감리용역	2018.12.01.~ 2018.12.19.	19,800	(주)■△	수의	2만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실 및 온라인보호국 충간 이전 계약	2017.12.15.~ 2017.12.20.	10,199	■▼	수의	2만원
	종합상황실 클라우드 서비스 용역 연장 계약	2018.01.01.~ 2018.08.31.	17,424	(재)○■	수의	2만원
	소계	17건				36만원
2016	ICOP 상황실 이전 설치 관련 사무실 조성 및 환경 개선 공사	2016.11.21.~ 2016.11.28.	36,390	■▽(석)	수의	4만원
	증거분석실 기능 이전설치	2016.11.23.~ 2016.11.28.	12,509	(주)■◆	수의	2만원
	재택근무자 교육용 영상장비 이전설치 관련 사무실 조성 및 환경개선공사	2016.11.25.~ 2016.11.28.	12,600	■▽(석)	수의	2만원
	오라클 유지보수 계약	2017.01.01.~ 2017.05.31.	13,694	■◇(주)	수의	2만원
	소계	4건				10만원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주의요구

제 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 업무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기관 운영,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사업과 관련된 계약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국비 100억 원 이상 수령기관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¹⁾

한편 중소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특성상 법정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워 협의가 필요할 경우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 구매목표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보호원은 2017년부터 매년 중기부로부터 판로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등의 의무 구매비율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 받는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0%를 초과하여야 했는데도, 2017년과 2018년도에 아래 [표]와 같이 의무구매 비율에 미달하였다.²⁾

[표]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계획 및 실적 현황

(금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법정 의무구매비율	2017년도		2018년도		비 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총구매액	계(A)	3,710	3,661	3,646	3,615		
	물품	1,768	761	1,826	713		
	공사	0	0	0	0		
	용역	1,942	2,900	1,820	2,902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계(B)	1,855	2,035	1,826	3,430		
	물품(C)	총 구매액의 50%	505	541	671	387	
	공사		0	0	0	0	
	용역		1,350	1,494	1,55	3,043	
기술개발제품액	금액(D)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50	44	68	8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	B/A		50.0	54.8	50.1	100.0	
기술개발 제품 구매비율(%)	D/C		10.0	<u>8.1</u>	10.1	<u>2.0</u>	기관 특성 상(출판, 단속 등의 업무 수행) 기술 개발제품 구매에 한계가 있음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한편 중기부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물품, 공사, 용역 구매 관련 예산비목을

1)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목표비율제도 현황

구 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법령 근거	판로지원법 제5조, 영 제3조~제5조	판로지원법 제13조, 영 제1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영 제7조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 2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영 제10조
의무 구매비율	총 구매액의 50%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물품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용역 구매총액의 5%	총 구매액의 1%	총 구매액의 1%

2) 중기부로부터 구매비율 협의 조정이 가능 내용의 문서를 통보받았으나 당시 보호원은 협의하지 않았음.

집계대상 비목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기관의 회계시스템에서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액 등으로 구분하여 구매 실적이 자동 집계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도, 보호원은 그 이행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관의 수행업무(연구용역 수행, 인쇄물 출판, 불법복제물 현장 단속,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채증 등) 특성 상 지난 2년 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2019년도에는 구매 계획 비율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5%로 조정할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통합전산센터 구축 과정에서 기술개발제품(GS인증 제품 3개, 녹색제품 1개 등)을 구매할 계획이며, 향후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 구매비율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중 기술개발제품의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표 1]과 같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여 2016. 10.부터 2019. 4.까지 총 169백만 원(1,338건)을 집행하였다.

[표 1]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월~4월)	합계	비고
편성액(A)	30,043	102,192	96,680	74,110	303,025	
집행액(B)	10,631	77,099	70,607	10,567	168,904	
집행잔액(B-A)	19,412	25,093	26,073	63,543	134,121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 Ⅲ. 비목별지침 4. 업무추진비(240목)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사용제한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사용

제한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보호원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이하 “법인카드지침”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업무추진비를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이 불분명하게 집행

보호원은 보호원 출범 초기에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를 월별 일괄지출하면서 [표 2]와 같이 집행목적과 집행대상(참석자)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영수증만 첨부하여 집행하였다.

[표 2]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원)

연번	지출일자	장소	사용내역	지출금액	참석자	부적정 집행 내역
1	2016.11.14.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11월분 9건)	713,600	-	집행목적, 집행대상 불분명
2	2016.12.08.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12월분 9건)	1,336,600	-	집행목적, 집행대상 불분명
3	2017.02.01.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1월분, 8건)	427,800		집행대상 불분명
4	2017.03.08.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2월분, 8건)	692,000		집행대상 불분명
5	2017.04.01.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3월분, 3건)	117,200		집행대상 불분명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보호원은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법인카드지침에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이 누락되어 집행대상이 불분명하였는데도 [표 3]과 같이 21건의 지급결의를 하였으며, 일요일인 2018. 4. 15. “2019년 신규증액 사업 발굴 국/팀별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85,000원을 사용하였는데, 참석자명단에 해당일의 휴일 근무명령서(출근 기

록) 등이 없는 직원 3명(EK, EL, EM)이 참석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표 3] 집행대상이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 원)

연번	지출일자	장소	사용내역	지출금액	참석자	부적정 집행 내역
1	2017.04.14.		음반제작물 저작권 보호 체계 관련	180,000		집행대상 불분명
2	2017.04.18.		한국저작권위원회 - 보호원 업무 공조 방안 논의	290,000		집행대상 불분명
3	2017.05.24.		문예학술저작권 관련 논의	74,000		집행대상 불분명
4	2017.05.29.		출판 저작권 관련 업무협의	158,000		집행대상 불분명
5	2017.05.30.		불법소프트웨어 근절 및 정품사용 촉진을 위한 협의	203,000		집행대상 불분명
6	2017.08.03.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보호원 간 민관협력 방안 논의	72,000		집행대상 불분명
7	2017.09.15.		음반 저작권 관련 업무 논의	60,000		집행대상 불분명
8	2017.10.20.		저작권 민-관협력 논의	43,900		집행대상 불분명
9	2017.10.31.		저작권 SW 관련 이슈 민관협력 논의	290,000		집행대상 불분명
10	2017.11.08.		저작권 민-관협력 논의	30,000		집행대상 불분명
11	2017.11.10.		저작권 민-관협력 논의	30,000		집행대상 불분명
12	2017.11.15.		저작권 민-관협력 논의	41,500		집행대상 불분명
13	2017.11.16.		저작권 민-관협력 논의	40,300		집행대상 불분명
14	2017.12.05.		사진 저작권 관련 이슈 협력 논의	172,000		집행대상 불분명
15	2017.12.05.		뉴스저작권 관련 이슈 협력 논의	102,000		집행대상 불분명
16	2017.12.18.		저작권 민-관협력 논의	101,000		집행대상 불분명
17	2018.04.15.		2019년 신규증액 사업 발굴 국/ 팀별 업무 협의	85,000	EJ, EK, EL, EM, EN	EK, EL, EM 출근기록 없음
18	2018.11.05.		저작권 보호 활동 공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	48,000		집행대상 불분명
19	2018.11.06.		음악제작물단속방안논의	43,600		집행대상 불분명
20	2018.11.16.		현장단속및수사지원,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관련업무논의	72,000		집행대상 불분명
21	2018.11.19.		만화 관련 불법 저작물 침해 정보 공유 및 피해사례 논의	21,000		집행대상 불분명
22	2018.11.26.		SW 저작권 관리 문화조성 및 공정이용 방안 논의	30,100		집행대상 불분명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업무추진비 예산 목적외 사용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공식회의, 행사경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간담회·종무식 등 일반적인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세목별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표 4]와 같이 업무추진비로 인쇄비(210-01목), 강연료(210-01목), 차량임차(210-07목), 출장비(220-01목) 등에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표 4] 업무추진비 부적정비목 지출 현황

(단위: 원)

연번	지출일자	장소	사용내역	지출금액	부적정 집행내역
1	2016.11.14.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250,000	인쇄비
2	2016.12.09.		오프라인 부산 지부사무소 점검 출장 교통비(12/16)	159,400	국내여비
3	2017.02.01.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200,000	인쇄비
4	2017.03.08.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200,000	인쇄비
5	2018.02.23.	—	SW보호, 디지털 포렌식 포럼 참석 및 워크숍 계획	700,000	강연료
6	2018.02.23.	—	SW보호, 디지털 포렌식 포럼 참석 및 워크숍 계획	700,000	강연료
7	2018.02.23.	—	SW보호, 디지털 포렌식 포럼 참석 및 워크숍 계획	61,600	강연료 ¹⁾
8	2018.02.23.	—	SW보호·디지털 포렌식 포럼 참석 및 워크숍 개최의 건	1,980,000	버스임차료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설립초기 업무추진비 관련 지침(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미비와 기관장 업무추진비 담당자의 잦은 퇴사와 업무미숙으로 기관장 관련 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 및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

1) [표 2]의 5, 6번 강의료에 대한 기타소득원천징수액

했으나, 향후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을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할 것이며, 분기별 집행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및 집행대상을 불명확하게 기재하거나, 예산 목적외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

제 목 이사회 운영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57조(이사)와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관 운영상 중요사항 제·개정

보호원 「정관」 제16조(소집)와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와 제7조(이사회 소집)에 따르면 보호원은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호원은 취업규칙에 해당¹⁾하는 「복무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

1) 보호원은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칙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고용부에 신고하였음.

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보호원은 2016. 10. 11.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무규칙」을 제정하고 세 차례(2018. 1. 24./2018. 3. 2./2018. 9. 18.) 개정하면서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나. 이사회 소집 통보 및 안건 배포 일자 미준수

보호원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이사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안건을 배포하여 이사, 감사 등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기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별표]와 같이 2018. 12. 20. 2018년 제4차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사회 소집 통보 및 안건 배포를 이사회 개최 1일 전인 2018. 12. 19.에 하는 등 보호원 설립(2016년) 이후 2019년 5월 현재까지 소집된 이사회 총 11회 중 7회(64%)는 1~6일 전에 안건을 배포하거나 서면개최라는 이유로 안건을 배포하지도 않았다.

위 “가”항 및 “나”항에 따라 보호원 운영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을 감독·견제해야 하는 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앞으로 주요내규의 제·개정 등 기관

운영 상 주요사항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이사회 소집 통보 및 안건 배포를 촉박하게 함으로써 이사 등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이사회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이사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이사회 개최 및 관련 안건 배포 명세

순번	회차 (구분)	개최일자 (서면여부)	안건 배포일	안건명 (보고안건/의결안건)	배포시기 (이사회개최일 기준)
1	2차 (임시)	2016.10.12. (대면)	2016.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규정 및 규칙 제정 보고 ○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년 4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보고 ○ 한국저작권보호원 직원 기본연봉 책정 기준(안) 	6일 전
2	3차 (임시)	2016.11. (서면)	2016.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임시 대표) 직무수행 경비 지급 	-
3	4차 (정기)	2016.12.23. (대면)	2016.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사업수행실적 보고 ○ 201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기본재산 편입(안) ○ 보수규정 개정(안) 	7일 전
4	1차 (정기)	2017.3.31. (대면)	2017.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임명 ○ (보고) 2016 회계연도 종합감사(회계, 업무) 결과 보고 ○ (의결) 2016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 (의결) 정관 일부개정(안) ○ (의결)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7일 전
5	2차 (정기)	2017.12.12. (대면)	2017.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2017년 사업수행실적 보고 ○ (의결) 201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의결) 직제규정 개정(안) ○ (의결) 인사규정 개정(안) 	5일 전
6	1차 (정기)	2018.3.23. (대면)	2018.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결과 보고 ○ (보고) 2017 회계연도 종합감사(회계, 업무) 결과 보고 ○ (의결) 2017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 (의결) 직제규정 개정(안) ○ (의결) 인사규정 개정(안) ○ (의결)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기본재산 편입(안) 	4일 전
7	2차 (임시)	2018.8.21. (대면)	2018.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정관 일부개정(안) 	5일 전
8	3차 (임시)	2018.11.22. (대면)	2018.11.16. 2018.11.20. (안건추가 재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원(이사 및 감사) 임명 보고 ○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상생적 노사관계구축 방안 보고 ○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 기능조정 현안 보고 ○ (보고) 저작권 보호 심의기능 강화 방안 보고 ○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회 내실화 운영 방안 보고 	6일 전
9	4차 (정기)	2018.12.20. (대면)	2018.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2018년 실국별 사업수행 실적 보고 ○ (보고) 조직현안 TFT 운영결과 보고 ○ (보고) 이사회 실무 소위원회 운영방안 보고 ○ (의결) 2019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1일 전
10	1차 (임시)	2019.2.15. (대면)	201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정관 일부개정안 ○ (의결)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의결)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 추진계획안 	7일 전
11	2차 (정기)	2019.2.28. (대면)	2019.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2018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 (의결) 2018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 (의결) 직제규정 개정안 ○ (의결)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의결)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7일 전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주의요구

제 목 「정보화 업무 운영 지침」 미준수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정보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보화 업무 운영 지침」(2018. 3. 2. 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연간 정보화시행계획 미수립

보호원 「정보화 업무 운영 지침」(이하 “정보화업무지침”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르면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정보화사업계획안을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을 종합하고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¹⁾을 포함한

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보호원 각 사업별 정보화사업 추진방안 및 체계에 관한 사항,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유관정보 시스템 간 정보 공동 활용, 연계,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화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²⁾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라 기관 전체의 관점에서 정보화 사업 간 유사·중복성³⁾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정보자원의 분배 및 재사용, 정보화 사업의 추진 시기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표 1]의 사업을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담당 부서는 2019년, 2020년 추진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정보화총괄부서(2018년 경영정보팀, 2019년 정보화팀)에 제출하지 않았고, 정보화총괄부서도 해당 부서에 정보화사업계획안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연간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 현황⁵⁾

연도	예산안 기준 정보화 사업	비고
2019	-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저작권보호심의팀
	-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고도화 및 운영	디지털포렌식팀
	-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 고도화	보호기술팀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유지관리	보호기술팀
	- SW점검도구 및 수사단속통계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현장조사팀
	- 저작권OK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	침해예방팀
2020	-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저작권보호심의팀
	-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고도화 및 운영	디지털포렌식팀
	-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 고도화	보호기술팀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유지관리	보호기술팀
	- SW점검도구 및 수사단속통계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현장조사팀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2)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 위원은 온라인보호국장, 현장대응국장, 보호기반국장,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장

3)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의 게시물 정보 식별 기능과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의 저작물명 변형 검출을 위한 한글 형태소 분석 모듈 등 공동 활용 가능 기능이 존재하여 시스템 간 유사·중복 기능 구축 여부 검토 필요

4) 2018년도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이 연계대상 시스템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긴급대응물 침해정보 및 방송저작물 정보 연계),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긴급대응저작물 침해정보 연계)의 사업 미완료로 사업 완료가 지체된 바 있음.(2018. 11. 16.)

5) 정보화총괄부서인 정보화팀이 계획한 "보호원 대표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2019년), "보호원 통합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2020년) 제외

나. 정보화 사업 산출물 관리 소홀

정보화업무지침 제15조에 따르면 정보화수행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완료 후 즉시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사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고, 통보 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산출물 등을 함께 제출⁶⁾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화총괄부서⁷⁾는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화 사업 관리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운영 등의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정보화수행 부서로부터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정보보안 위반 사항⁸⁾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 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가·삭제된 기능 및 신규도입 정보 자원이 있는 경우 범정부EA·국가기준데이터 포털(www.geap.go.kr)에 현행화¹⁰⁾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화수행부서는 정보화업무지침이 제정된 이후 완료한 [표 2]의 정보화 사업 8개 모두 정보화업무지침에 명시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산출물 정보시스템 현황, 신규도입 또는 변경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등을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SW(폰트)점검도구 단속통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보고를 하면서 정보화총괄부서장의 협조를 받았다.

6)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산출물, 정보시스템현황,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7)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보호원 「보안업무처리규칙」 제23조 ①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책임자를 두며, 정보보안책임자는 전산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하고, 정보화 사업 관리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운영 등의 정보화 업무(보호원 「업무분장규칙」 <별표> 부서별 업무분장 1. 경영기획실 (3)정보화팀)를 수행하는 부서

8)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확인

10)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기반구조 등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범정부EA 포털에 즉시 반영하여 등록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표 2] 정보화 사업 완료 통보 대상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완료통보 여부	추진부서	비고
1	불법복제물 심의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	저작권보호심의팀	
2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ICOP-T) 고도화 및 운영	×	디지털포렌식팀	
3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	보호기술팀	
4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W) 기능개선 및 고도화	×	보호기술팀	
5	SW(폰트)점검도구 단속통계시스템 고도화	×	현장조사팀	완료보고 시 협조
6	저작권OK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	×	보호홍보팀(현 침해예방팀)	
7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검색시스템 구축	×	저작권보호심의팀	완료보고 시 협조
8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검색솔루션 설치 및 지원	×	저작권보호심의팀	완료보고 시 협조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다. 프로그램(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 소홀

정보화업무지침 제23조에 따르면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자체 또는 외부용역에 의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 구성도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문서들은 프로그램(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부서와 전산실 운영 부서(정보화총괄부서)에서 관련 업무 수행 시 운영관리자가 참조해야 할 문서로 [표 3]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행화 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표 3]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주요 문서 내용

연번	문서명	주요내용	비고
1	시스템관리방법론 및 절차서	백업 정책, 복구방법, 아키텍처 정의서, 업무흐름도, 개발표준 및 가이드 등	
2	관리지침서	시스템 구성 및 구동 방법, 내부 시스템 연계 관리, 사용자별 매뉴얼 등	

3	운영지침서	홈페이지 운영, 운영 프로그램 적용 방법, 웹서버 기동 절차,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등	
4	프로그램설명서	시스템 내 프로그램 설명, 메뉴 구성 및 사용 방법, 프로그램정의서 등	
5	구축시스템 구성도	구축환경 및 프레임워크 구조, 연계 시스템 구성 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등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런데 정보화총괄부서(정보화팀)에서는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등 6개의 프로그램(정보시스템) 모두에 대해 정보화업무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할 시스템관리방법론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정보시스템) 담당부서에서는 [표 4]와 같이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의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운영지침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고, ‘저작권 OK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정보화업무지침에서 규정한 모든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룹웨어시스템’, ‘메일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표 4] 프로그램(정보시스템) 관리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시스템구성도	담당부서
1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	○	○	○	○	보호기술팀
2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	○	×	○	○	보호기술팀
3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	○	○	○	○	디지털포렌식팀
4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	○	○	○	○	○	저작권보호심의팀
5	저작권 OK 홈페이지	×	×	×	×	×	침해예방팀
6	SW점검도구 및 수사단속통계 시스템	○	○	○	○	○	현장조사팀
7	대표 누리집	○	○	○	○	○	정보화팀 (정보화총괄부서)
8	그룹웨어시스템	○	○	○	○	×	정보화팀 (정보화총괄부서)
9	메일시스템	○	○	○	○	×	정보화팀 (정보화총괄부서)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7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보화·정보보안 관련 지침 제·개정을 통해 관련 법규준수에 노력하였지만 만성적인 지원부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으나, 향후 정보화 관련 지침 등을 현행화 하고 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보호원 내 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앞으로 연간 정보화시행계획 미수립, 정보화 사업 산출물 관리 소홀, 프로그램 등록·관리 소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화 추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문화체육관광부

통 보

제 목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저작권법」 제122조의5와 제133조 제2항1)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저작권 침해수사 및 단속 사무를 지원하면서 불법저작물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는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저작권법」 제133조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저작물을 수거·폐기 및 삭제 권한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 등의 권한을 명시하고

1)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⑥ 생략

있지 않아, 관계공무원²⁾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³⁾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및 삭제를 위한 보호원 단속요원의 현장 조사를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 리에게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있으며,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리는 위 수사의뢰 요청공문을 근거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불법행위 단속, 수거·폐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타 법률의 경우, [별표]과 같이 불법상황을 제거하거나 불법생산물의 수거·폐기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현장 출입·조사 등의 권한이 대부분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행위인 불법저작물의 수거·폐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호원은 2017년~2019년 5월까지 총 22건의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고, 이 중 12건(55%)이 캐릭터상품 복제물의 유통에 해당하고, 10건(45%)은 출판물의 불법복제 및 판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수사의뢰 요청서 22건 중 8건은 보호원 현장단속반원들이 불법저작물 보관창고라 추정되는 현장을 발견하였으나 사업주의 출입동의를 받지 못하여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채, 온라인 유통 사이트에서 업체 명의로 판매여부를

2)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현장조사팀)

3)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불법저작물의 수거·폐기를 위한 현장 점검 시 사업주의 출입 거부 발생 횟수를 확인한 결과, 2017. 1월~2019년 현재까지 총 73건의 사업장 출입 거부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리) 역시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는 불법저작물 유통 사업장내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공무원이 영장을 발부 받는 기간 중에도 불법저작물이 은닉·유통 되는 등 보호원이 수행하는 불법저작물의 원활한 수거·폐기 업무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사 법령의 사례를 참고하여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관계공무원의 현장출입 권한 부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 수거·폐기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① 문화체육관광부(□과)는 저작권 침해의 복제물은 주거지, 영업소 등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6조(주거보장),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과 관련하여 출입조사권의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출입 조사 권한의 도입 필요성과 현장출입 조사의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업무의 적시 수행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출입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른 불법저작물의 수거·폐기 업무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입 권한에 관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수거·폐기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불법행위 단속 등 타 법령 사례 비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출판산업진흥법	장애인고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2016. 1. 27., 2017. 1. 17., 2018. 4. 17.></p> <p>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그 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30.></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p>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나 그 밖에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2. 유해간행물 <p>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질문을 할 수 있다.</p> <p>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질문을 할 수 있다.</p>	<p>제76조(보고와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限의 위임·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p>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저작권 OK 지정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필요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안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제공 및 정품 저작물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합법 저작물 유통 및 자율적인 저작권 관리가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OK 지정(저작권 OK 지정서 발급, 인증마크 부여·부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호원 「저작권 OK지정사업 운영 매뉴얼(2018. 5월 시행)」에 따르면 ‘저작권 OK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을 하면 보호원은 지정위원회의 평가·의결을 통해 지정(최초 2년)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현재 총 1,333개의 저작권 OK 업체를 지정¹⁾하였다.

1) 저작권 OK 지정 현황(2015년~2019년 4월)

(단위: 개)

구분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만화	교육	뉴스	기타1	기타2	B2B	모바일	캐릭터	합계
온라인 사이트 (URL 기준)	15	4	17	0	22	31	33	32	-	19	52	-	225
오프라인 매장	62	-	890	-	-	-	-	-	5	-	-	151	1,108
소계	77	4	907	0	22	31	33	32	5	19	52	151	1,333
연도별지정(누계)	112개(2015년)→1,053개(2016년)→1,184개(2017년)→1,329개(2018년)→1,333개(2019.4월)												

또한 보호원은 OK 지정 확대를 위해 리플렛 제작·배포, 저작권 OK포럼 개최, 찾아가는 열린 상담실 및 저작권 침해 상담 시 OK지정 유도, 각종 행사 시 연계 홍보 및 부스 운영, 언론 홍보,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저작권 보호 교육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호원이 위 사업의 목표와 취지를 달성(1. 업무개요 참조)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장조사(관련협회의 협조, 자체 조사 등)로 각주 1)의 분야별 저작권 관련 업체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중 지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보호원은 2018년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동 협회 회원인 출판매장 167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저작권 OK 지정 업체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경험도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캐릭터, 음악매장, 만화 등 다른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조사 또는 관련협회의 협조 등을 거쳐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적사항에 동감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OK지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캐릭터, 음악매장, 만화 분야 관련 업체를 파악(관련협회의 협조 또는 자체 조사 등)하고, OK 지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협회와의 MOU 체결, 보호원장의 명의 서신 발송 및

협의 등을 통해 업체의 OK 지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 OK 지정 확대를 위해 음악매장, 캐릭터 및 만화 분야 등에 대해서도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지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화체육관광부

통 보

제 목	불법저작물 실버감시원 성과목표 설정 및 복무관리 등 제도운영 미흡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저작권법」 제133조 제2항1)에 따라 불법저작물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는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업무 중 대학가 서점(복사업체) 및 노점 등 현장(이하 “오프라인”이라 한다)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상시 감시망 구축을 위해 불법저작물 제보요원(이하 “실버감시원”이라 한다)을 매년 20명 규모로 채용(만 60세 이상)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보호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실적과 동 실적 중 실버감시원의 제보에 의한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실적은 [표 1]과 같다.

1)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⑥ 생략

[표 1]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현황(실버감시원 제보 현황 대비)

구분	보호원 수거·폐기 전체 현황 (실버감시원 제보건 포함)			실버감시원 제보에 따른 보호원 수거·폐기 현황			점수 비율 (B/A, %)
	인력(명)	건	점(A)	인력(명)	건	점(B)	
2015년	18	2,037	14,548,965	20	292	1,508,371	10.4
2016년	18	1,818	7,816,798	20	241	1,057,890	13.5
2017년	17	1,282	4,152,847	20	144	569,012	13.7
2018년	13	530	1,437,935	20	38	186,881	13.0
2019년 4월 현재	14	206	386,832	20	15	33,024	8.5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자료 재구성(보호원은 보호원의 수거·폐기 전체현황 중 수사의뢰건과 특별단속건 일부는 실버감시원 제보 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함)

2. 관계법령(판단기준)

보호원은 매년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최근 4년간 실버감시원 운영사업의 성과목표를 ‘전년도 제보실적 대비 3% 상향한 제보실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원의 「실버감시원 근로자 운영 매뉴얼」(이하 “실버감시원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실버감시원의 현장 근무 시간은 평일 13:00~18:00까지 휴게 시간 포함하여 5시간이고, 근무 사실(매시간별, 출·퇴근시간 포함) 확인자료 및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업무 내역은 실버감시원이 매주 월요일마다 보호원(사무실)에 출근하여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불법저작물 유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속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표 1]과 같이 보호원이 매년 수거·폐기하는 불법저작물의 수치(실버감시원의 제보실적 포함)가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유통 불법저작물의 상시 감시망 구축” 사업에 적정한 성과목표(제보건수) 설정과 실버감시원의 불법저작물 구분 능력 배양 및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보호원이 당해 연도 성과목표를 전년도 제보 실적 대비 3% 증가된 실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표 2]와 같이 매년 성과목표가 전년대비 낮게 설정되고 있고, 실버감시원 인원 규모는 그대로인데도 2017년 이후 성과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으며, 실버감시원의 제보 건수에 일부 허수²⁾도 있는 등 실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실버감시원의 불법복제물 유통 제보실적에 따른 보호원 단속 직원의 현장점검 실적은 4개년 평균 11%로 약 90%의 제보 건수가 현장 단속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³⁾

따라서 보호원은 위 “1항” [표 1]의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건수 감소 추세 및 실버감시원의 제보건수 추이 등을 분석하여 실버감시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2] 실버감시원 제보건수 현황(성과목표 대비 실적 및 제보에 따른 현장점검 실적)

(단위: 건)

구분	성과목표 (A)	제보실적 (B)	제보에 따른 현장조사요원 점검 실적				제보대비 실적비율 (B/C, %)
			계(C)	계도	수 거 (건수/점수)	폐업 등	
2016년	3,400	5,229	738	497	241 / 1,057,890	0	14.1
2017년	5,400	5,045	741	597	144 / 569,012	0	14.7
2018년	5,200	4,114	344	185	38 / 186,881	121	8.4
2019년	4,200	896	63	47	15 / 33,024	1	7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자료 재구성(2019년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은 2019.4. 기준)

2) 보호원은 실버감시원의 제보실적건수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보건수의 허수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첫째, 실버감시원 조별(2인 1조로 매년 10개조 내외 편성 운영) 제보사항 중복, 둘째, 제보내용 중 서점, 음반매장의 경우 정품 판매업소(2019.4.월 제보건수 421건 중 100여건) 다수. 셋째, 캐릭터 상품 제보내용은 실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불법저작물 여부를 보호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

3) 보호원은 제보 중 신빙성이 높은 사안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현장 단속을 한다고 함.

한편, 보호원은 실버감시원 매뉴얼에 따라 실버감시원의 복무상황과 감시 활동 내역은 매주 월요일마다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월 2회 서면으로 제출⁴⁾받는 방식으로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버감시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이 실버감시원의 일자별 근태상황을 2주가 지난 후에야 알 수 있는 등⁵⁾ 복무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실버감시원 복무관리에 대해서는 시간대 별 현재 위치 사진 전송 및 특이사항에 대해 즉시 유선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실버감시원 주요 목표치 설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9년에 「실버감시원 근로자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실버감시원 회의 시 제보사항 중복여부, 정품 판매업소 및 불법복제물 구분 능력 등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실버감시원의 제보실적 추이 및 복무 실태를 분석하여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버감시원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 실버감시원이 한 달에 두 번 보호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본인의 복무 확인 사진 40장(날짜별로 4장씩 시간기록이 표시되어 있는 10일간의 출근, 퇴근, 휴게시간 전후 사진)과 함께 2주간의 불법복제물 유통 현장 활동내역을 보호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

5) 보호원이 감사기간 중 제출한 실버감시원의 출퇴근 시간기록표(제출한 사진에 시간기록으로 확인) 상으로는 실버감시원의 복무관리 상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직원폭언에 대한 조치 및 노조활동 등 관련 발언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저작권법」 제122조2에 따라 2016년 9월 30일에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저작권 보호 시책 수립지원, 저작권 보호 및 침해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보호원 원장 EO(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2017. 3. 8.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2019. 7월 현재까지 「정관」 제10조(임원의 직무) 등에 따라 보호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7조(임원의 청렴의무)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원장은 보호원을 대표하고 조직관리, 인사, 사업 등을 총괄하는 책임

자로서 소속 직원의 폭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사과·화해 유도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조직 내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에 공식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이 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받을 우려가 있고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팀 팀장의 폭언에 대한 조치 미흡

원장은 2018. 2. 27. ●팀 소속 직원 EP로부터 ○팀 팀장 EJ¹⁾이 폭언을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하였는데, 그 내용은 EQ(4급, 2018. 7. 6. 퇴사)과 ER(4급, 현 ◆팀), 위 EP(5급, 현 ㉠팀) 등 3명이 2018. 2. 20. 보호원 ○팀 사무실에서 보호원 홈페이지와 관련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EJ이 이들 3명을 향해 큰소리로 “왜 홈페이지 갖고 지랄들이야”라고 폭언²⁾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장은 관계기관에 위 진정에 대한 공식조사를 의뢰하는 대신 본인이 직접 EJ과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자 위 진정접수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당사자 간의 사과·화해 유도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였고, 자세한 상황파악과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도 관계기관에 조사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1) 위 사람은 이 건 관련 갑질(폭언) 논란이 제기되어 문체부 □과에서 조사를 착수하여 조사를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2018. 10. 29.)에서 이 건이 지적되자 2018. 10. 30.자로 퇴사함.

2) 당시 관련자(ER) 및 목격자(EG, ES)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였음.

이와 같이 원장의 조치가 지연되자 EP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에 진정을 하였고(2018. 4. 30. 진정/ 2018. 5. 9. 접수), 인권위로부터 이를 이첩받은(2018. 6. 1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과로부터 조사(2018. 6. 20.)를 받게 되었으며, 보호원에서 적의 조치하라는 조사결과를 통보³⁾받고도 EJ이 사과를 계속 거부한다는 사유로 제재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폭언 관련 조치 미흡에 따른 조직 내 갈등이 장기화되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⁴⁾을 받게 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까지 보도⁵⁾됨에 따라 보호원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나. 노조활동 등 관련 발언 부적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등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외에는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보호원의 경우 원장과 부서장(경영기획실장, 온라인보호국장, 현장대응국장, 보호기반국장), 감사역 등 일부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노조가입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상시 30명 초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호원의 경우 직

3) 업무추진 관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써, 당시 정황에 대한 증언이 서로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 간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보호원에서 적의 조치하라는 조사결과를 보호원에 통보(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정착 협조: □과-3355, 2018.7.18.)

4) 2018. 10. 29. 국정감사 시 ■당 FQ 의원이 보호원 ○팀 팀장의 갑질, 보호원장의 조직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면서 특별감사를 요구함. 한편 원장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EP 노조 부지부장에 대해 ‘부지부장이 이상한 사람이니 조사를 해보라’라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18.10. 국감 직후/ ET 보좌관 면담 시), ‘인권위 진정’에 대해 ‘나는 몰랐다’고 하면서 ‘직원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발언함(‘19.2.11./ 전 직원 월례조회 시)

5) 한겨레 2018. 10. 18.(“직장갑질에 노조방해까지” 몸살 앓는 문체부 공공기관)

원은 96명이다.(2019. 6. 4. 기준)

그런데 원장은 [표]와 같이 보호원은 노조가 필요없다거나, 보직자들은 노조를 탈퇴하라거나, 보호원에 고충처리위원이 필요 없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표] 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장소·대상	주요발언 내용	비고
직원 동호회 만찬	(‘17.7.25.) ‘우리처럼 작은 조직은 노조가 필요가 없다’	노조 가입범위: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직원 동호회 만찬	(‘18.5.2.) 불같이 화를 내며 “장”이 붙은 사람들은 전부 노조 탈퇴하라’	
주간보고 회의	(‘18.2.26.) ‘우리 같이 작은 조직이 고충처리위원이 뭐가 필요하냐,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전부 해결해 주겠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그 결과 보호원 노조⁶⁾가 원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직원들의 고충을 또한 은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성명서를 발표(2019. 3. 12.) 하였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⁷⁾됨에 따라 보호원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원장은 부적절한 발언 등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입장과 견해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직원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향후 보호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에게 앞으로

6) ◇◆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설립일: '16. 10. 31., 상급노조 가입일: '18. 4. 27., 조합원 55명: '19. 3. 31. 기준)

7) 아시아경제 2019. 3. 15. (“노사 단체협약 어떻게 맺었나” 체결과정 관심 갖는 공공기관 이사회)

직원폭언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거나, 노조활동 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통 보

제 목 신규채용 직원 경력 산정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신규채용 직원 경력 및 연봉을 산정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신규채용직원의 경력 및 연봉은 경력산정기준표(인사규정」 제18조 제5항 및 별표 1) 및 표준연봉표(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호원은 신규직원의 경력을 정확히 산정하고 연봉 책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2018년 정규직 직원 9명(2018. 6. 18.) 및 무기계약직 직원 3명(2018. 5. 28.)을 채용하고 이들의 다른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산정¹⁾하여 연봉

1) EU(3급)은 타기관 경력 10년 인정하고 그 경력을 연봉에 반영하여 책정하였고(48,136,000원), 나머지 5명은 타기관 경력이 없어 표준연봉표상의 5급 연봉하한 금액(24,243,000원)으로 책정함

산정에 반영하면서, [표]와 같이 EV(5급)과 EW(비서-5급)의 경우 정당 경력의 일부를, EX(5급)과 EY(5급) 경우 정당 경력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는 등 경력을 잘못 산정하여 이들의 연봉도 정당한 연봉보다 계 8,350,000원 적게 산정되었다.

[표] 신규채용 직원 경력 산정 및 연봉 미반영 내역

(단위: 원)

구 분	부 서	성 명	정당경력 산정 및 연봉		실제경력 인정 및 책정연봉		미반영 금액 (A-B)	미인정 경력
			경력	연봉(A)	경력	연봉(B)		
정규직	▣팀	EV	3년3월	27,155,000	2년	26,035,000	1,120,000 (1년3월)	석사학위(2년) 및 군 경력(3년3월) 중 석사 경력 2년만 인정하여 1년 3월 연봉에 미반영
	▢팀	EX	1년9월	25,811,000	-	24,243,000	1,568,000 (1년9월)	군 경력(1년9월) 연봉에 미반영
	▣팀	EY ²⁾	4년5월	28,194,000	-	24,243,000	3,951,000 (4년5월)	건설회사 근무기간 4년 5월 연봉 미반영
무기 계약직	▢팀	EW	4년5월	28,194,000	2년6월	26,483,000	1,711,000 (1년11월)	책정당시 담당자 실수로 일부경력 연봉에 미반영
합 계							8,350,000	

자료 :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증원 인력을 확정 받을 때 증원인력의 연봉을 5급 하한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연봉책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 현재 「경력산정 및 승급협의체」³⁾에서 논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앞으로 신규채용 직원의 경력을 잘못

2) 4차 전형(임원면접)시 본인이 경력과 상관없이 신입으로 입사하여 일하겠다고 면접관에게 말했다고 하나, EY과 면담 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함(2019.6.3.)

3) 보호원과 보호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에 따라 전직원의 경력을 공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사용자 위원(보호원 간부 4명), 근로자 위원(보호원 노동조합원 4명)으로 하는 경력산정 및 승급협의체를 구성하여 2019. 1. 10.부터 2019. 5. 15. 까지 19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 한 바 있음.

산정하여 연봉이 적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표]의 직원 4명에게 적게 지급된 계 8,350,000원의 지급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화체육관광부

통 보

제 목 직책수당 지급대상인 팀장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팀장 이하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고, 「직제규정」에 따른 부서장 및 팀장급 보직자에게는 직책수당(매월 부서장 80만 원, 팀장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타공공기관인 보호원은 위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¹⁾

한편 보호원 「직제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부서장 및 팀장은 원장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로서 「보수규정」 제20조에 따라

1)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음.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80만원, 50만 원(검사역²⁾ 포함)의 직책수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직책수당의 지급대상인 보호원의 부서장과 팀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호원과 유사한 조직규모인 ■○ 및 ■㉠은 직책수당을 지급받는 부서장과 팀장³⁾ 모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보호원은 「보수규정」 제19조 및 「연장 및 휴일 근무 수당 지급지침」 제3조에 부서장만을 제외한 ‘팀장이하의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⁴⁾함으로써, 팀장의 경우 직책수당과 함께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원은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보호원 설립이후 2019년 5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관리자에 해당하는 팀장 14명에게 직책수당 계 140,861,243원을 지급하고도 이와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 계 60,558,935원을 지급하였다.

[표] 직책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2016~2019년)

(단위: 원)

연번	성명	직위(직급)	직책수당 지급액	연장근무수당 지급액
1	EZ	現 팀장/3급	16,000,000	190,214
2	EK	現 팀장/3급	16,000,000	16,700,326
3	EH	現 팀장/3급	16,000,000	6,697,593
4	FA	現 검사역/3급	16,000,000	3,225,896
5	FB	現 팀장/3급	15,000,000	3,241,830
6	FC	現 팀장/3급	8,500,000	6,675,683
7	FD	現 팀장/3급	8,500,000	642,206
8	EI	現 팀장/3급	3,442,584	3,213,573
9	FE	現 팀장/3급	2,421,052	2,405,081

2) 보호원 「보수규정」에는 검사역의 직책수당을 보호원의 팀장급으로 책정하고 있음.

3) ■○(팀장) 50만 원, ■㉠(팀장) 45만 원의 직책수당을 받고 있음. 한편, 공무원의 경우 사무관급 보직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직책수당은 소액(8만 원)으로 편성 지급함.

4) 「연장 및 휴일 근무 수당 지급지침」 제3조(적용범위)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급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 신청 또는 명령에 따라 근무한 직원을 대상(직제규정 제5조에 규정한 부서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연번	성명	직위(직급)	직책수당 지급액	연장근무수당 지급액
10	FF	前 팀장/3급	14,576,555	4,217,056
11	FG	前 팀장/3급	2,691,387	669,365
12	EJ(퇴사)	前 팀장/3급	12,461,723	11,565,613
13	FH(퇴사)	前 팀장/3급	6,172,249	266,302
14	FI(퇴사)	前 팀장/3급	3,095,693	848,197
합계			140,861,243	60,558,935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타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노조와 협의를 통해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현재 직책수당과 함께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받고 있는 팀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등 관련규정의 개정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문화체육관광부 통보

제 목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운영 부적정
소 관 실 국 저작권국
관 계 기 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용

1. 업무개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은 「정관」 제46조에 따라 조직·정원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원은 「인사규정」, 「보수규정」 제·개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승인을 받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18. 3. 8. 제정)」(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25조(인사운영)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은 인사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¹⁾와 제1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²⁾를 준용하도록 되

1) 제16조 ⑦기록물 보존에 관한 내부 규정을 통해, 채용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7조 ②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어 있다.

한편 신규 직원의 경력은 「인사규정」 제18조 제5항 및 [별표 1] 경력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인사규정」을 제·개정 시에는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상의 내용에 부합되게 제·개정해야 하고, 규정 조항은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인 2017. 2. 24. 기획재정부(제도기획과)로부터 신규지정 공공기관이 새로 적용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문서³⁾를 받았고, 문체부로부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이하 각각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인사규정 제·개정 미흡

① 채용관련 특별조사 결과 조치 미흡

보호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특별조사(2018. 11. 16.~12. 28. / 문체부) 결과, [표 1]과 같이 채용관련 서류 영구 보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관련 내용을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2019. 2. 28.)을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시행(2019. 3. 6.)⁴⁾한 바 있다.

3) 해당 문서에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의 준용에 대하여 숙지하여 조치하라고 되어 있음.

4) 보호원은 인사규정 등 5건이 지적됨.

그런데 위 특별조사 결과 인사규정 관련 5개의 조치요구 사항 중 ①경영지침(제16조 제7항)과 다르게 채용관련 서류를 영구보존이 아닌 5년 보존기간으로 그대로 설정하고 있거나(인사규정 제18조 제6항), ②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관련 사항을 인사규정에 반영(제18조의3 제2항 신설)하면서,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원장이 따로 정하는 등 2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표 1] 인사규정 개정 미흡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 결과 조치요구	보호원 인사규정 개정	비고
(제16조 제7항) 기록물 보존에 관한 내부 규정을 통해, 채용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 기간을 정하여야 함	채용관련 서류 보존기간 영구 보존 관련 규정 마련 필요	(제18조 제6항) 직원 채용과 관련한 채용후보자 명부, 평가자료 등의 인사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5년 이상 → 영구로 개정 필요
(제17조 제2항) 불합격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관련 규정 마련 필요	(제18조의3 제2항) 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자 구제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해야 함	조항 신설은 하였으나, 피해자 구제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음

② 타기관 인턴으로 근무한 신규 직원의 경력산정 기준 불명확

보호원 「인사규정」 [별표 1]의 경력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신규직원의 경력산정 시 채용 이전 다른 공공기관(정부 인정 협/단체/위원회)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 70%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턴의 경우는 ※ 표시로 하여 보호원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80%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턴의 경우에는 보호원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해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원은 인턴경력 인정에 대해서 담당자별 해석의 차이로 인해 2017년 채용 담당자는 인턴을 계약직으로 해석하여 신규 직원 FR의 재단법인 ◇●에서의 인턴 근무경력⁵⁾을 공공기관 계약직 근무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 70%를 인정한 바 있다.

5) 재단법인 ◇●에서 인턴으로 9월 28일간 근무함. 인턴경력은 보호원 근무 시에만 인정하고 있음(80%)

반면 현재 인사 담당자는 인턴은 보호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경력 산정을 인정하고 있어 인턴을 계약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인턴경력 인정 관련 규정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직원의 인턴경력 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준용 의무사항 미반영

2018. 4. 12. 개정된 혁신지침에는 기타공공기관은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영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제1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승진의 제한), 제23조(위탁 업체 등의 관리), 제25조(포상 제한),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제29조(징계의 감경), 제30조(징계 시효),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혁신지침 개정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 3. 8. 배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대책(2018. 1. 29.)의 일환으로 채용의 공정관리, 피해자 구제 등의 조항은 전 공공기관이 준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호원은 공정한 채용관리를 위해 경영지침의 준용 의무사항들을 「인사규정」에 반영하여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보호원 「인사규정」을 검토한 결과, [표 2]와 같이 준용 의무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되어 있어 공정한 채용관리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반영 현황(세부내용 [별표 2])

구분	경영지침 조문	보호원 규정 반영여부(조문 표기)
1	경영지침 제16조(채용 공정성 관리)	일부 반영(인사규정 제18조의2(공정채용))
2	경영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 등)	미반영
3	경영지침 제23조(위탁 업체 등의 관리)	미반영

구분	경영지침 조문	보호원 규정 반영여부(조문 표기)
4	경영지침 제25조(포상 제한)	미반영
5	경영지침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일부반영(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6	경영지침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미반영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나. 「보수규정」 운영 부적정

① 퇴직월 급여지급 기준 관련 규정 미개정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준용하여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체부 기획혁신담당관실(구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이와 관련하여 2018. 9. 27.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지급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호원에 통보⁶⁾한 바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예산집행지침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던 「보수규정」의 퇴직월 급여지급 관련 조항을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서를 받은 이후에라도 조속히 개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보호원은 노조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해당하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고, 2018. 9. 27. 문서 수신 이후 퇴직한 3명에게 계 396,095원의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보호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표 3]과 같이 퇴직자 12명에게 2,204,620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

6) “공공기관이 퇴직월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퇴직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운용하는 등 예산집행지침 위반사례가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지적된 바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공공기관은 관련 내부규정이 예산집행지침과 상이한 경우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 주시고,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퇴직월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3]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이후 퇴직자 및 퇴직금 지급 내역

(단위: 원)

연번	성명	근속기간	퇴직일자	퇴직금 지급액 (A)	예산편성지침 적용 시 퇴직금(B)	차액(A-B)
1	FJ	6월 4일	2017.04.03.	2,911,826	2,731,532	180,294
2	FK	1년 2개월*	2017.04.10.	2,505,847	2,477,405	28,442
3	FL	10월 15일	2017.08.14.	2,043,063	1,947,907	95,156
4	FH	1년 10일	2017.10.10.	6,455,819	6,122,483	333,336
5	FM	1년 1월 10일	2017.11.09.	3,616,609	3,448,165	168,444
6	FN	1년 2월 29일	2017.12.29.	3,433,190	3,668,341	235,151
7	FI	6월 7일 (휴직기간 제외)	2018.03.05.	2,960,394	2,627,857	332,537
8	FO	1년 7월 18일	2018.05.18.	4,831,146	4,778,351	52,795
9	EQ	1년 9월 6일	2018.07.06.	7,935,515	7,553,145	382,370
10	EJ	2년 29일	2018.10.30.	13,852,895	13,544,320	308,575
11	EN	1년 1월	2019.02.28.	2,538,567	2,523,052	15,515
12	FP	1년 18일	2019.03.15.	2,293,052	2,221,047	72,005
합계				55,377,923	53,643,605	2,204,620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② 정년퇴직 일자 관련규정 부적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37조(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제1항에는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퇴직금, 휴가·휴직제도 등)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제4항에는 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직원의 정년퇴직 일자를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보호원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에는 정년퇴직일자는 정년에 도달한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호원이 2018. 11. 9.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년퇴직자가 최초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2024년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될 우려가 있다.

③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관련규정 미개정

혁신지침 제49조(명예퇴직금 지급기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고자 하는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은 정년이 명예퇴직 신청 시로부터 5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2분의 1, 정년이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4분의 1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체부 기획혁신담당관실(구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이와 관련하여 2018. 10. 31. 각 기관이 혁신지침과 다른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을 회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명예퇴직금 관련 규정이 혁신지침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개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보호원은 「보수규정」의 명예퇴직금 관련 규정이 혁신지침과 달라7)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조가 수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미반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 권고)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원이 준용해야 하는 예산집행지침에는 상품권 구매, 여비규정 등에 대해서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르도록 규정⁸⁾되어 있다.

따라서 보호원은 기관 설립 전에 권고된 권익위 제도개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통보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보호원이 내규에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반영된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2013년)과 관련하여 관련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고,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방안」(2012년)은 8건의 과제 중 2건의 과제만 반영되어 있는 등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내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 보호원 「보수규정」 제33조(명예퇴직금 등) 제33조(명예퇴직금 등) ①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의한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년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 :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정년 남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 : 퇴직 당시 연봉월액의 반액 × {60 월 + (정년 잔여월수 - 60월) × 1/2} 3. 정년 남은 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 정년 남은 기간이 10년 이내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10년을 초과하는 정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8) **(상품권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2013.9.23.)」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여비규정 관련)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등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여 마련하되,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14.10월)’방안에 따른다.

(공용차량 관련) 각 공공기관은 공용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공용차량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표 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미반영 명세

권고시기	권고명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자체 규정 등에 미반영한 내용
2008	공공기관 공무국의 여행 개선방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참조하여, 국외여행유형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
		결과보고서의 제출 시에는 항공권 및 여권 사본 등 검증자료를 포함
201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및 예산낭비 방지방안	이해관계자 경비부담시 허용범위, 기준, 절차 등 구체화
		공무국외여행 대행사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
		항공운임 지급방식을 발매자에 직접 지급 또는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개선
2012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방안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일괄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가입 의무화
		전용차량 배기량은 행안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하여 공용차량의 대형화 억제
		공용차량 임차와 구입에 대한 행안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준수
		임차계약시 나라장터시스템(입찰방식) 활용
		공용차량 임차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
공용차량 운영현황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공개항목은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참조)		
2013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 마련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을 비교 절차 마련
		상품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시행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사규정」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과 경력산정 기준이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채용 전반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하겠으며, 국민권익위

원회 제도개선 사항 중 자체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조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예정이며, 명예퇴직 수당 관련 조항 등은 노조와 협의하여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채용비리 특별조사 결과 조치요구 사항의 이행,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준용 의무사항의 반영, 인턴경력 산정 기준의 명확화, 퇴직월 급여지급 기준과 정년퇴직일 기준 및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의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반영을 위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인사규정」 [별표 1]의 경력산정 기준표

구 분		100%	90%	80%	70%	60%	비 고
공 직	공무원	○					계약직 70%
	군 근무	○					
공 기 공 관	공공기관(출연, 위탁 및 보조사업기관, 법률상 위원회 등)	○					계약직 70%
	원내교섭단체 이상 정당	○					
	원내교섭단체 이하 정당			○			
	정부 인정 협/단체/위원회			○			계약직 70%
	정부 인정 협/단체/위원회(문화계)		○				계약직 70%
	공공기관 객원 연구원 등			○			연말정산서
	국제 공공기구 등	○					
학 력	석사			2년 인정			수료 미인정
	박사			3년 인정			
	박사수료			2.5년 인정			
교 육	전임강사 이상(전문대 이상)	○					
	초중고 전임 교사	○					
	시간강사(전문대이상, 9시간/주 이상)			○			
	시간강사(전문대이상, 6시간/주 이상)					○	
	대학조교(석박사 2, 3년 제외 경력)			○			
	일반 사설학원 강사(증명확인)					○	전일근무시
	학교(초/중/고 위촉 강사)			○			전일근무시
시민단체	시민단체				○		연말정산서
기 타	기능직, 고용직(운전, 시설관리 등) 경력					○	
	일용직 경력			미인정			
	연구보조원 경력			미인정			
기 업	상장사(기능직, 고용직 제외)	○					계약직 70%
	비상장사(기능직, 고용직 제외)		○				계약직 70%
	전문기관 (연구소, 로펌, 회계법인, 경영컨설팅)	○					전문직종종사
	관련 산업분야 특수경력	○					
	주식회사(자경영)		○				
자격증	변호사			3년 인정			
	회계사			2년 인정			
	세무사			1년 인정			
	기술사			2년 인정			

※ 동일 기간 내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경력만 인정함

※ 학력은 최종학력만 인정하되, 학위취득 기간 동안 업무경력 등 중복 시 해당 업무경력 기간에서 학위경력을 감하여 산정함

※ **보호원 근무 경력이 있는 계약직(특수전문직)의 경우에는 90% 인정하되, 업무보조직 및 인턴은 80% 인정함**

※ 시간제근무경력(임시직,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등의 경력은 제외)에 대하여는 시간제근무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경력으로 인정함

[별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준용의무사항 조항별 반영 현황

구분	경영지침 조문	보호원 규정 반영여부 (조문 표기)
경영지침 제16조 (채용 공정성 관련)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미반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가 참여하여야 하는 채용 과정에는 위탁업체 계약, 문제 추출인쇄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의 전체 세부 과정이 포함된다.	미반영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 2. 면접전형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3. 한 기관의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해당 기관에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한 기관의 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4.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될 수 있음	일부반영 인사규정 제18조의2(공정 채용) 제3항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내부 규정에 마련하여야 하고, 채용 공고에 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반영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 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채용에 관한 내부 규정상 결격사유를 두는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미반영
	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인사부와 감사부서에서 동시에 관리하도록 하되, 감사 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하도록 한다.	미반영
	⑦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록물 보존에 관한 내부 규정을 통해, 채용관련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미반영
	⑧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면접전형과 필기시험 실시, 합격자 결정 등 직원채용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미반영
	⑨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급·직종(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미반영
	⑩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미반영
경영지침 제17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위를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반영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경영지침 제19조 (직원 채용 우대조치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무능력중심의 채용관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상 중소기업경력자 등에 대한 채용우대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경력자를 채용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기관의 정원 조정시 우대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한국사 능력을 전형요소에 반영하여 역사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반영

구분	경영지침 조문	보호원 규정 반영여부 (조문 표기)
경영지침 제22조 (승진의 제한)	<p>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p> <p>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항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다만, 해당 기관이 아래에서 정한 기간보다 승진 제한 기간을 더 늘려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등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반영 인사규정 제32조(승진의 제한)
경영지침 제23조 (위탁 업체 등의 관리)	<p>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 또는 승진 등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과 승진 등에 대한 위탁 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절차의 위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p> <p>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p>	미반영
경영지침 제25조 (포상 제한)	<p>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사람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미반영
경영지침 제26조 (징계 등 복무관리)	<p>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p>	반영 인사규정 제4장 포상 및 징계
	<p>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처분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일부반영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p>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인사위원회 등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p>	반영 인사규정 제48조(징계의결요구)
	<p>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p>	미반영
	<p>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원을 기관장이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권한을 내부 규정에 둘 수 있다.</p>	미반영
	<p>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인사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p>	반영 인사규정 제32조(승진의 제한) 및 제46조(징계사유) 제2항
	<p>⑦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직 이상 3년 2. 정직 미만 2년 	미반영
경영지침 제29조	<p>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등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p>	반영 인사규정 제54조(정상참)

구분	경영지침 조문	보호원 규정 반영여부 (조문 표기)
(징계의 감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 공적 2. 기관장 표창(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은 제외)을 받은 공적 3. 인사위원회 등이 마련한 별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5. 채용비위 	작과 감경의결)
경영지침 제30조 (징계 시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반영 인사규정 제51조(징계의 결요구의 시효)
경영지침 제43조 (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p>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미반영